

르엘 리버파크 센텀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7.11일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33-9988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07.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7.11.(금)	2025.07.21.(월)	2025.07.22.(화)	2025.07.23.(수)	2025.07.29.(화)	2025.08.04.(월) ~ 2025.08.08.(금)	2025.08.11.(월) ~ 2025.08.13.(수)

※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청약 관련 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르엘 리버파크 센텀 견본주택 내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1533-9988)을 실시하고 있으나, 문의 전화 폭주로 인해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따른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 유선 상담 한계 등에 따라 청약관련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 관련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 자격 등을 숙지하여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 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 (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rreliberparcseum.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이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할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할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 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 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1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4.07.1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7.21.(월)	2025.07.22.(화)	2025.07.23.(수)	2025.07.29.(화)	2025.08.04.(월) ~ 2025.08.08.(금)	2025.08.11.(월) ~ 2025.08.13.(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견본주택 (주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8번지)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취소는 청약 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 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신청 취소가 불가합니다.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 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규제지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에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축과-21347호(2025.7.1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856-6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 48층(1개동), 67층(5개동) 총 2,070세대
[특별공급 310세대(기관추천 12세대, 다자녀가구 204세대, 신혼부부 27세대, 노부모부양 57세대, 생애최초 10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30년 05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 면적)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공용 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비분	총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 면적	주거 공용 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4000694	01	084.9280	84	84.9280	29.1141	114.0421	64.7223	178.7644	13.0715	120	12	12	27	3	10	64	56	2
		02	104.8855A	104A	104.8855	35.3015	140.1870	79.9315	220.1185	16.1432	162	0	16	0	4	0	20	142	3
		03	104.6983B	104B	104.6983	35.2834	139.9817	79.7888	219.7705	16.1144	240	0	24	0	7	0	31	209	4
		04	104.6983C	104C	104.6983	35.2834	139.9817	79.7888	219.7705	16.1144	120	0	12	0	3	0	15	105	2
		05	104.9523D	104D	104.9523	35.6619	140.6142	79.9824	220.5966	16.1534	42	0	4	0	1	0	5	37	1
		06	125.8735A	125A	125.8735	44.9778	170.8513	95.9261	266.7774	19.3735	488	0	48	0	14	0	62	426	8
		07	125.6543B	125B	125.6543	44.6916	170.3459	95.7590	266.1049	19.3397	43	0	4	0	1	0	5	38	1
		08	125.9550C	125C	125.9550	44.7760	170.7310	95.9882	266.7192	19.3860	43	0	4	0	1	0	5	38	1
		09	125.8735D	125D	125.8735	44.9538	170.8273	95.9261	266.7534	19.3735	122	0	12	0	3	0	15	107	2
		10	154.9326	154	154.9326	52.9459	207.8785	118.0716	325.9501	23.8460	684	0	68	0	20	0	88	596	12
		11	244.9791	244	244.9791	88.5784	333.5575	186.6945	520.2520	37.7053	6	0	0	0	0	0	0	6	0
합 계											2,070	12	204	27	57	10	310	1,760	36

* 상기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분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착오가 없도록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대지비분 및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의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여 면적 합산(계약면적 등), 확정측량 등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공부정리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발생한 경우 분양 당시의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의 면적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 등)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지하주차장등 관련시설 면적의 합산으로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기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사업계획승인상 면적과 상이할 수 있으며, 기타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은 추후 사업계획승인변경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청약 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전용면적)	084.9280	104.8855A	104.6983B	104.6983C	104.9523D	125.8735A	125.6543B	125.9550C	125.8735D	154.9326	244.9791
약식표기	84	104A	104B	104C	104D	125A	125B	125C	125D	154	24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해당 동·호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6.05.29		2027.01.29	2027.09.30	2028.05.31	2029.01.31	2029.09.28	입주지정일	
84	105동 4호	6층	1	449,827,000	832,173,000	-	1,282,000,000	64,100,000	128,200,000	128,200,000	128,200,000	128,200,000	128,200,000	128,200,000	128,200,000	448,700,000
		7층	1	452,286,000	837,714,000	-	1,290,000,000	64,5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129,000,000	451,500,000
		8층	1	455,794,000	844,206,000	-	1,300,000,000	65,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130,000,000	455,000,000
		9층	1	459,253,000	849,747,000	-	1,309,000,000	65,450,000	130,900,000	130,900,000	130,900,000	130,900,000	130,900,000	130,900,000	130,900,000	458,150,000
		10~14층	5	463,063,000	855,937,000	-	1,319,000,000	65,950,000	131,900,000	131,900,000	131,900,000	131,900,000	131,900,000	131,900,000	131,900,000	461,650,000
		15~19층	4	466,220,000	861,780,000	-	1,328,000,000	66,400,000	132,800,000	132,800,000	132,800,000	132,800,000	132,800,000	132,800,000	132,800,000	464,800,000
		20~24층	5	466,925,000	864,075,000	-	1,331,000,000	66,55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133,100,000	465,850,000
		25~29층	5	470,433,000	870,567,000	-	1,341,000,000	67,05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469,350,000
		30~34층	5	472,138,000	872,862,000	-	1,345,000,000	67,25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470,750,000
		35~39층	5	475,295,000	878,705,000	-	1,354,000,000	67,7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473,900,000
		40~44층	5	476,351,000	881,649,000	-	1,358,000,000	67,900,000	135,800,000	135,800,000	135,800,000	135,800,000	135,800,000	135,800,000	135,800,000	475,300,000
		45~47층	2	479,508,000	887,492,000	-	1,367,000,000	68,35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478,450,000
		48~52층	5	481,213,000	889,787,000	-	1,371,000,000	68,55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479,850,000
		53~57층	5	484,721,000	896,279,000	-	1,381,000,000	69,050,000	138,100,000	138,100,000	138,100,000	138,100,000	138,100,000	138,100,000	138,100,000	483,350,000
	58~62층	5	485,426,000	898,574,000	-	1,384,000,000	69,200,000	138,400,000	138,400,000	138,400,000	138,400,000	138,400,000	138,400,000	138,400,000	484,400,000	
	63~67층	5	488,934,000	905,066,000	-	1,394,000,000	69,700,000	139,400,000	139,400,000	139,400,000	139,400,000	139,400,000	139,400,000	139,400,000	487,900,000	
	105동 5호	6층	1	445,820,000	824,180,000	-	1,270,000,000	63,500,000	127,000,000	127,000,000	127,000,000	127,000,000	127,000,000	127,000,000	127,000,000	444,500,000
		7층	1	448,363,000	829,637,000	-	1,278,000,000	63,900,000	127,800,000	127,800,000	127,800,000	127,800,000	127,800,000	127,800,000	127,800,000	447,300,000
		8층	1	451,871,000	836,129,000	-	1,288,000,000	64,400,000	128,800,000	128,800,000	128,800,000	128,800,000	128,800,000	128,800,000	128,800,000	450,800,000
		9층	1	454,414,000	841,586,000	-	1,296,000,000	64,800,000	129,600,000	129,600,000	129,600,000	129,600,000	129,600,000	129,600,000	129,600,000	453,600,000
10~14층		5	458,308,000	847,692,000	-	1,306,000,000	65,300,000	130,600,000	130,600,000	130,600,000	130,600,000	130,600,000	130,600,000	130,600,000	457,100,000	
15~19층		4	461,465,000	853,535,000	-	1,315,000,000	65,750,000	131,500,000	131,500,000	131,500,000	131,500,000	131,500,000	131,500,000	131,500,000	460,250,000	
20~24층		5	462,254,000	855,746,000	-	1,318,000,000	65,900,000	131,800,000	131,800,000	131,800,000	131,800,000	131,800,000	131,800,000	131,800,000	461,300,000	
25~29층	5	465,762,000	862,238,000	-	1,328,000,000	66,400,000	132,800,000	132,800,000	132,800,000	132,800,000	132,800,000	132,800,000	132,800,000	464,800,000		

		30~34층	5	467,551,000	864,449,000	-	1,332,000,000	66,600,000	133,200,000	133,200,000	133,200,000	133,200,000	133,200,000	466,200,000
		35~39층	5	470,708,000	870,292,000	-	1,341,000,000	67,05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134,100,000	469,350,000
		40~44층	5	471,848,000	873,152,000	-	1,345,000,000	67,25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134,500,000	470,750,000
		45~47층	2	475,005,000	878,995,000	-	1,354,000,000	67,7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135,400,000	473,900,000
		48~52층	5	476,760,000	882,240,000	-	1,359,000,000	67,950,000	135,900,000	135,900,000	135,900,000	135,900,000	135,900,000	475,650,000
		53~57층	5	479,303,000	887,697,000	-	1,367,000,000	68,35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136,700,000	478,450,000
		58~62층	5	481,091,000	889,909,000	-	1,371,000,000	68,55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137,100,000	479,850,000
		63~67층	5	484,600,000	896,400,000	-	1,381,000,000	69,050,000	138,100,000	138,100,000	138,100,000	138,100,000	138,100,000	483,350,000
		6층	1	485,690,000	1,102,100,000	110,210,000	1,698,000,000	84,900,000	169,800,000	169,800,000	169,800,000	169,800,000	169,800,000	594,300,000
		7층	1	489,183,700	1,109,833,000	110,983,300	1,710,000,000	85,500,000	171,000,000	171,000,000	171,000,000	171,000,000	171,000,000	598,500,000
		8층	1	492,614,700	1,117,623,000	111,762,300	1,722,000,000	86,100,000	172,200,000	172,200,000	172,200,000	172,200,000	172,200,000	602,700,000
		9층	1	496,108,400	1,125,356,000	112,535,600	1,734,000,000	86,700,000	173,400,000	173,400,000	173,400,000	173,400,000	173,400,000	606,900,000
		10~14층	5	499,173,200	1,134,388,000	113,438,800	1,747,000,000	87,350,000	174,700,000	174,700,000	174,700,000	174,700,000	174,700,000	611,450,000
		15~19층	4	501,745,900	1,140,231,000	114,023,100	1,756,000,000	87,800,000	175,600,000	175,600,000	175,600,000	175,600,000	175,600,000	614,600,000
		20~24층	5	504,096,300	1,145,367,000	114,536,700	1,764,000,000	88,200,000	176,400,000	176,400,000	176,400,000	176,400,000	176,400,000	617,400,000
		25~29층	5	506,955,100	1,151,859,000	115,185,900	1,774,000,000	88,700,000	177,400,000	177,400,000	177,400,000	177,400,000	177,400,000	620,900,000
		30~34층	5	509,304,400	1,156,996,000	115,699,600	1,782,000,000	89,100,000	178,200,000	178,200,000	178,200,000	178,200,000	178,200,000	623,700,000
		35~39층	5	511,878,200	1,162,838,000	116,283,800	1,791,000,000	89,550,000	179,100,000	179,100,000	179,100,000	179,100,000	179,100,000	626,850,000
		40~44층	5	514,513,600	1,168,624,000	116,862,400	1,800,000,000	90,000,000	180,000,000	180,000,000	180,000,000	180,000,000	180,000,000	630,000,000
		45~47층	2	518,516,800	1,177,712,000	117,771,200	1,814,000,000	90,700,000	181,400,000	181,400,000	181,400,000	181,400,000	181,400,000	634,900,000
		48~52층	5	519,436,700	1,179,603,000	117,960,300	1,817,000,000	90,850,000	181,700,000	181,700,000	181,700,000	181,700,000	181,700,000	635,950,000
		53~57층	5	522,295,500	1,186,095,000	118,609,500	1,827,000,000	91,350,000	182,700,000	182,700,000	182,700,000	182,700,000	182,700,000	639,450,000
		58~62층	5	524,644,800	1,191,232,000	119,123,200	1,835,000,000	91,750,000	183,500,000	183,500,000	183,500,000	183,500,000	183,500,000	642,250,000
		63~67층	5	527,504,700	1,197,723,000	119,772,300	1,845,000,000	92,250,000	184,500,000	184,500,000	184,500,000	184,500,000	184,500,000	645,750,000
		6층	1	485,690,000	1,102,100,000	110,210,000	1,698,000,000	84,900,000	169,800,000	169,800,000	169,800,000	169,800,000	169,800,000	594,300,000
		7층	1	489,183,700	1,109,833,000	110,983,300	1,710,000,000	85,500,000	171,000,000	171,000,000	171,000,000	171,000,000	171,000,000	598,500,000
		8층	1	492,614,700	1,117,623,000	111,762,300	1,722,000,000	86,100,000	172,200,000	172,200,000	172,200,000	172,200,000	172,200,000	602,700,000
		9층	1	496,108,400	1,125,356,000	112,535,600	1,734,000,000	86,700,000	173,400,000	173,400,000	173,400,000	173,400,000	173,400,000	606,900,000
		10~14층	5	499,173,200	1,134,388,000	113,438,800	1,747,000,000	87,350,000	174,700,000	174,700,000	174,700,000	174,700,000	174,700,000	611,450,000
		15~19층	4	501,745,900	1,140,231,000	114,023,100	1,756,000,000	87,800,000	175,600,000	175,600,000	175,600,000	175,600,000	175,600,000	614,600,000
		20~24층	5	504,096,300	1,145,367,000	114,536,700	1,764,000,000	88,200,000	176,400,000	176,400,000	176,400,000	176,400,000	176,400,000	617,400,000
		25~29층	5	506,955,100	1,151,859,000	115,185,900	1,774,000,000	88,700,000	177,400,000	177,400,000	177,400,000	177,400,000	177,400,000	620,900,000
		30~34층	5	509,304,400	1,156,996,000	115,699,600	1,782,000,000	89,100,000	178,200,000	178,200,000	178,200,000	178,200,000	178,200,000	623,700,000
		35~39층	5	511,878,200	1,162,838,000	116,283,800	1,791,000,000	89,550,000	179,100,000	179,100,000	179,100,000	179,100,000	179,100,000	626,850,000
		40~44층	5	514,513,600	1,168,624,000	116,862,400	1,800,000,000	90,000,000	180,000,000	180,000,000	180,000,000	180,000,000	180,000,000	630,000,000
		45~48층	4	517,086,300	1,174,467,000	117,446,700	1,809,000,000	90,450,000	180,900,000	180,900,000	180,900,000	180,900,000	180,900,000	633,150,000
		6층	1	480,481,900	1,090,471,000	109,047,100	1,680,000,000	84,000,000	168,000,000	168,000,000	168,000,000	168,000,000	168,000,000	588,000,000
		7층	1	484,109,800	1,098,082,000	109,808,200	1,692,000,000	84,600,000	169,200,000	169,200,000	169,200,000	169,200,000	169,200,000	592,200,000
		8층	1	487,540,800	1,105,872,000	110,587,200	1,704,000,000	85,200,000	170,400,000	170,400,000	170,400,000	170,400,000	170,400,000	596,400,000
		9층	1	490,168,700	1,113,483,000	111,348,300	1,715,000,000	85,750,000	171,500,000	171,500,000	171,500,000	171,500,000	171,500,000	600,250,000
		10~14층	5	494,367,700	1,122,393,000	112,239,300	1,729,000,000	86,450,000	172,900,000	172,900,000	172,900,000	172,900,000	172,900,000	605,150,000
		15~19층	4	496,941,500	1,128,235,000	112,823,500	1,738,000,000	86,900,000	173,800,000	173,800,000	173,800,000	173,800,000	173,800,000	608,300,000
		20~24층	5	499,426,100	1,133,249,000	113,324,900	1,746,000,000	87,300,000	174,600,000	174,600,000	174,600,000	174,600,000	174,600,000	611,100,000
		25~29층	5	502,284,900	1,139,741,000	113,974,100	1,756,000,000	87,800,000	175,600,000	175,600,000	175,600,000	175,600,000	175,600,000	614,600,000
		30~34층	5	503,769,500	1,144,755,000	114,475,500	1,763,000,000	88,150,000	176,300,000	176,300,000	176,300,000	176,300,000	176,300,000	617,050,000
		35~39층	5	506,342,200	1,150,598,000	115,059,800	1,772,000,000	88,600,000	177,200,000	177,200,000	177,200,000	177,200,000	177,200,000	620,200,000
		40~44층	5	509,112,900	1,156,261,000	115,626,100	1,781,000,000	89,050,000	178,100,000	178,100,000	178,100,000	178,100,000	178,100,000	623,350,000
		45~47층	2	513,115,000	1,165,350,000	116,535,000	1,795,000,000	89,750,000	179,500,000	179,500,000	179,500,000	179,500,000	179,500,000	628,250,000
		48~52층	5	514,170,200	1,167,118,000	116,711,800	1,798,000,000	89,900,000	179,800,000	179,800,000	179,800,000	179,800,000	179,800,000	629,300,000
		53~57층	5	517,029,000	1,173,610,000	117,361,000	1,808,000,000	90,400,000	180,800,000	180,800,000	180,800,000	180,800,000	180,800,000	632,800,000
		58~62층	5	519,513,600	1,178,624,000	117,862,400	1,816,000,000	90,800,000	181,600,000	181,600,000	181,600,000	181,600,000	181,600,000	635,600,000
		63~67층	5	522,372,400	1,185,116,000	118,511,600	1,826,000,000	91,300,000	182,600,000	182,600,000	182,600,000	182,600,000	182,600,000	639,100,000
	104B	101동 4호	6층	474,738,000	1,078,420,000	107,842,000	1,661,000,000	83,050,000	166,100,000	166,100,000	166,100,000	166,100,000	166,100,000	581,350,000
		102동 4호	7층	478,505,600	1,085,904,000	108,590,400	1,673,000,000	83,650,000	167,300,000	167,300,000	167,300,000	167,300,000	167,300,000	585,550,000

		58~62층	5	743,836,000	1,689,240,000	168,924,000	2,602,000,000	130,100,000	260,200,000	260,200,000	260,200,000	260,200,000	260,200,000	260,200,000	910,700,000		
		63~67층	5	750,360,200	1,704,218,000	170,421,800	2,625,000,000	131,250,000	262,500,000	262,500,000	262,500,000	262,500,000	262,500,000	262,500,000	918,750,000		
	105동 6호 106동 6호	5층	2	583,262,400	1,325,216,000	132,521,600	2,041,000,000	102,050,000	204,100,000	204,100,000	204,100,000	204,100,000	204,100,000	204,100,000	714,350,000		
			6층	2	586,654,800	1,332,132,000	133,213,200	2,052,000,000	102,600,000	205,200,000	205,200,000	205,200,000	205,200,000	205,200,000	718,200,000		
			7층	2	590,048,300	1,339,047,000	133,904,700	2,063,000,000	103,150,000	206,300,000	206,300,000	206,300,000	206,300,000	206,300,000	722,050,000		
			8층	2	592,440,700	1,345,963,000	134,596,300	2,073,000,000	103,650,000	207,300,000	207,300,000	207,300,000	207,300,000	207,300,000	725,550,000		
			9층	2	595,833,100	1,352,879,000	135,287,900	2,084,000,000	104,200,000	208,400,000	208,400,000	208,400,000	208,400,000	208,400,000	729,400,000		
			10~14층	10	608,404,900	1,380,541,000	138,054,100	2,127,000,000	106,350,000	212,700,000	212,700,000	212,700,000	212,700,000	212,700,000	212,700,000	744,450,000	
			15~19층	8	614,189,700	1,394,373,000	139,437,300	2,148,000,000	107,400,000	214,800,000	214,800,000	214,800,000	214,800,000	214,800,000	214,800,000	751,800,000	
			20~24층	10	619,975,600	1,408,204,000	140,820,400	2,169,000,000	108,450,000	216,900,000	216,900,000	216,900,000	216,900,000	216,900,000	216,900,000	759,150,000	
			25~29층	10	626,760,400	1,422,036,000	142,203,600	2,191,000,000	109,550,000	219,100,000	219,100,000	219,100,000	219,100,000	219,100,000	219,100,000	766,850,000	
			30~34층	10	632,546,300	1,435,867,000	143,586,700	2,212,000,000	110,600,000	221,200,000	221,200,000	221,200,000	221,200,000	221,200,000	221,200,000	774,200,000	
			35~39층	10	638,046,100	1,449,049,000	144,904,900	2,232,000,000	111,600,000	223,200,000	223,200,000	223,200,000	223,200,000	223,200,000	223,200,000	781,200,000	
			40~44층	10	643,830,900	1,462,881,000	146,288,100	2,253,000,000	112,650,000	225,300,000	225,300,000	225,300,000	225,300,000	225,300,000	225,300,000	788,550,000	
			45~47층	4	650,616,800	1,476,712,000	147,671,200	2,275,000,000	113,750,000	227,500,000	227,500,000	227,500,000	227,500,000	227,500,000	227,500,000	796,250,000	
			48~52층	10	674,759,300	1,532,037,000	153,203,700	2,360,000,000	118,000,000	236,000,000	236,000,000	236,000,000	236,000,000	236,000,000	236,000,000	826,000,000	
			53~57층	10	680,544,100	1,545,869,000	154,586,900	2,381,000,000	119,050,000	238,100,000	238,100,000	238,100,000	238,100,000	238,100,000	238,100,000	833,350,000	
		58~62층	10	687,330,000	1,559,700,000	155,970,000	2,403,000,000	120,150,000	240,300,000	240,300,000	240,300,000	240,300,000	240,300,000	240,300,000	841,050,000		
		63~67층	10	693,114,800	1,573,532,000	157,353,200	2,424,000,000	121,200,000	242,400,000	242,400,000	242,400,000	242,400,000	242,400,000	242,400,000	848,400,000		
125B	104동 3호	5층	1	585,153,800	1,328,042,000	132,804,200	2,046,000,000	102,300,000	204,600,000	204,600,000	204,600,000	204,600,000	204,600,000	204,600,000	716,100,000		
				6층	1	587,529,700	1,334,973,000	133,497,300	2,056,000,000	102,800,000	205,600,000	205,600,000	205,600,000	205,600,000	205,600,000	719,600,000	
				7층	1	590,906,700	1,341,903,000	134,190,300	2,067,000,000	103,35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206,700,000	723,450,000	
				8층	1	594,282,600	1,348,834,000	134,883,400	2,078,000,000	103,900,000	207,800,000	207,800,000	207,800,000	207,800,000	207,800,000	727,300,000	
				9층	1	596,659,600	1,355,764,000	135,576,400	2,088,000,000	104,400,000	208,800,000	208,800,000	208,800,000	208,800,000	208,800,000	730,800,000	
				10~14층	5	609,165,400	1,383,486,000	138,348,600	2,131,000,000	106,550,000	213,100,000	213,100,000	213,100,000	213,100,000	213,100,000	213,100,000	745,850,000
				15~19층	4	615,918,300	1,397,347,000	139,734,700	2,153,000,000	107,650,000	215,300,000	215,300,000	215,300,000	215,300,000	215,300,000	215,300,000	753,550,000
				20~24층	5	621,672,300	1,411,207,000	141,120,700	2,174,000,000	108,700,000	217,400,000	217,400,000	217,400,000	217,400,000	217,400,000	217,400,000	760,900,000
				25~29층	5	627,425,200	1,425,068,000	142,506,800	2,195,000,000	109,750,000	219,500,000	219,500,000	219,500,000	219,500,000	219,500,000	219,500,000	768,250,000
				30~34층	5	634,178,100	1,438,929,000	143,892,900	2,217,000,000	110,850,000	221,700,000	221,700,000	221,700,000	221,700,000	221,700,000	221,700,000	775,950,000
125C	104동 6호	35~39층	5	639,644,900	1,452,141,000	145,214,100	2,237,000,000	111,850,000	223,700,000	223,700,000	223,700,000	223,700,000	223,700,000	223,700,000	782,950,000		
				40~44층	5	645,398,900	1,466,001,000	146,600,100	2,258,000,000	112,900,000	225,800,000	225,800,000	225,800,000	225,800,000	225,800,000	790,300,000	
				45~48층	4	652,151,800	1,479,862,000	147,986,200	2,280,000,000	114,000,000	228,000,000	228,000,000	228,000,000	228,000,000	228,000,000	798,000,000	
				5층	1	579,498,000	1,316,820,000	131,682,000	2,028,000,000	101,400,000	202,800,000	202,800,000	202,800,000	202,800,000	202,800,000	709,800,000	
				6층	1	582,938,800	1,323,692,000	132,369,200	2,039,000,000	101,950,000	203,900,000	203,900,000	203,900,000	203,900,000	203,900,000	713,650,000	
				7층	1	586,379,600	1,330,564,000	133,056,400	2,050,000,000	102,500,000	205,000,000	205,000,000	205,000,000	205,000,000	205,000,000	717,500,000	
				8층	1	588,820,400	1,337,436,000	133,743,600	2,060,000,000	103,000,000	206,000,000	206,000,000	206,000,000	206,000,000	206,000,000	721,000,000	
				9층	1	592,261,200	1,344,308,000	134,430,800	2,071,000,000	103,550,000	207,100,000	207,100,000	207,100,000	207,100,000	207,100,000	724,850,000	
				10~14층	5	604,024,400	1,371,796,000	137,179,600	2,113,000,000	105,650,000	211,300,000	211,300,000	211,300,000	211,300,000	211,300,000	739,550,000	
				15~19층	4	609,906,000	1,385,540,000	138,554,000	2,134,000,000	106,700,000	213,400,000	213,400,000	213,400,000	213,400,000	213,400,000	746,900,000	
125D	102동 6호 103동 6호	20~24층	5	616,787,600	1,399,284,000	139,928,400	2,156,000,000	107,800,000	215,600,000	215,600,000	215,600,000	215,600,000	215,600,000	215,600,000	754,600,000		
				25~29층	5	622,669,200	1,413,028,000	141,302,800	2,177,000,000	108,850,000	217,700,000	217,700,000	217,700,000	217,700,000	217,700,000	761,950,000	
				30~34층	5	628,550,800	1,426,772,000	142,677,200	2,198,000,000	109,900,000	219,800,000	219,800,000	219,800,000	219,800,000	219,800,000	769,300,000	
				35~39층	5	634,147,400	1,439,866,000	143,986,600	2,218,000,000	110,900,000	221,800,000	221,800,000	221,800,000	221,800,000	221,800,000	776,300,000	
				40~44층	5	640,029,000	1,453,610,000	145,361,000	2,239,000,000	111,950,000	223,900,000	223,900,000	223,900,000	223,900,000	223,900,000	783,650,000	
				45~48층	4	645,910,600	1,467,354,000	146,735,400	2,260,000,000	113,000,000	226,000,000	226,000,000	226,000,000	226,000,000	226,000,000	791,000,000	
				5층	2	580,678,500	1,317,565,000	131,756,500	2,030,000,000	101,500,000	203,000,000	203,000,000	203,000,000	203,000,000	203,000,000	710,500,000	
				6층	2	583,116,000	1,324,440,000	132,444,000	2,040,000,000	102,000,000	204,000,000	204,000,000	204,000,000	204,000,000	204,000,000	714,000,000	
				7층	2	586,552,400	1,331,316,000	133,131,600	2,051,000,000	102,550,000	205,100,000	205,100,000	205,100,000	205,100,000	205,100,000	717,850,000	
				8층	2	588,988,800	1,338,192,000	133,819,200	2,061,000,000	103,050,000	206,100,000	206,100,000	206,100,000	206,100,000	206,100,000	721,350,000	
		9층	2	592,425,200	1,345,068,000	134,506,800	2,072,000,000	103,600,000	207,200,000	207,200,000	207,200,000	207,200,000	207,200,000	725,200,000			
		10~14층	10	604,171,900	1,372,571,000	137,257,100	2,114,000,000	105,700,000	211,400,000	211,400,000	211,400,000	211,400,000	211,400,000	739,900,000			
		15~19층	8	611,044,700	1,386,323,000	138,632,300	2,136,000,000	106,800,000	213,600,000	213,600,000	213,600,000	213,600,000	213,600,000	747,600,000			
		20~24층	10	616,917,500	1,400,075,000	140,075,500	2,157,000,000	107,850,000	215								

		30~34층	10	628,664,200	1,427,578,000	142,757,800	2,199,000,000	109,950,000	219,900,000	219,900,000	219,900,000	219,900,000	219,900,000	219,900,000	769,650,000
		35~39층	10	634,250,900	1,440,681,000	144,068,100	2,219,000,000	110,950,000	221,900,000	221,900,000	221,900,000	221,900,000	221,900,000	221,900,000	776,650,000
		40~44층	10	640,124,800	1,454,432,000	145,443,200	2,240,000,000	112,000,000	224,000,000	224,000,000	224,000,000	224,000,000	224,000,000	224,000,000	784,000,000
		45~47층	4	646,997,600	1,468,184,000	146,818,400	2,262,000,000	113,100,000	226,200,000	226,200,000	226,200,000	226,200,000	226,200,000	226,200,000	791,700,000
		48~52층	10	670,489,900	1,523,191,000	152,319,100	2,346,000,000	117,300,000	234,600,000	234,600,000	234,600,000	234,600,000	234,600,000	234,600,000	821,100,000
		53~57층	10	677,363,800	1,536,942,000	153,694,200	2,368,000,000	118,400,000	236,800,000	236,800,000	236,800,000	236,800,000	236,800,000	236,800,000	828,800,000
		58~62층	10	683,236,600	1,550,694,000	155,069,400	2,389,000,000	119,450,000	238,900,000	238,900,000	238,900,000	238,900,000	238,900,000	238,900,000	836,150,000
		63~67층	10	689,109,400	1,564,446,000	156,444,600	2,410,000,000	120,500,000	241,000,000	241,000,000	241,000,000	241,000,000	241,000,000	241,000,000	843,500,000
		5층	1	791,804,000	1,798,360,000	179,836,000	2,770,000,000	138,500,000	277,000,000	277,000,000	277,000,000	277,000,000	277,000,000	277,000,000	969,500,000
		6층	1	796,486,000	1,807,740,000	180,774,000	2,785,000,000	139,250,000	278,500,000	278,500,000	278,500,000	278,500,000	278,500,000	278,500,000	974,750,000
		7층	1	800,168,000	1,817,120,000	181,712,000	2,799,000,000	139,950,000	279,900,000	279,900,000	279,900,000	279,900,000	279,900,000	279,900,000	979,650,000
		8층	1	804,850,000	1,826,500,000	182,650,000	2,814,000,000	140,700,000	281,400,000	281,400,000	281,400,000	281,400,000	281,400,000	281,400,000	984,900,000
		9층	1	808,532,000	1,835,880,000	183,588,000	2,828,000,000	141,400,000	282,800,000	282,800,000	282,800,000	282,800,000	282,800,000	282,800,000	989,800,000
		10~14층	5	825,260,000	1,873,400,000	187,340,000	2,886,000,000	144,300,000	288,600,000	288,600,000	288,600,000	288,600,000	288,600,000	288,600,000	1,010,100,000
		15~19층	4	833,624,000	1,892,160,000	189,216,000	2,915,000,000	145,750,000	291,500,000	291,500,000	291,500,000	291,500,000	291,500,000	291,500,000	1,020,250,000
		20~24층	5	841,988,000	1,910,920,000	191,092,000	2,944,000,000	147,200,000	294,400,000	294,400,000	294,400,000	294,400,000	294,400,000	294,400,000	1,030,400,000
		25~29층	5	850,352,000	1,929,680,000	192,968,000	2,973,000,000	148,650,000	297,300,000	297,300,000	297,300,000	297,300,000	297,300,000	297,300,000	1,040,550,000
		30~34층	5	852,284,500	1,936,105,000	193,610,500	2,982,000,000	149,100,000	298,200,000	298,200,000	298,200,000	298,200,000	298,200,000	298,200,000	1,043,700,000
		35~39층	5	853,786,500	1,939,285,000	193,928,500	2,987,000,000	149,350,000	298,700,000	298,700,000	298,700,000	298,700,000	298,700,000	298,700,000	1,045,450,000
		40~44층	5	855,288,500	1,942,465,000	194,246,500	2,992,000,000	149,600,000	299,200,000	299,200,000	299,200,000	299,200,000	299,200,000	299,200,000	1,047,200,000
		45~47층	2	856,790,500	1,945,645,000	194,564,500	2,997,000,000	149,850,000	299,700,000	299,700,000	299,700,000	299,700,000	299,700,000	299,700,000	1,048,950,000
		48~52층	5	915,979,000	2,079,110,000	207,911,000	3,203,000,000	160,150,000	320,300,000	320,300,000	320,300,000	320,300,000	320,300,000	320,300,000	1,121,050,000
		53~57층	5	924,343,000	2,097,870,000	209,787,000	3,232,000,000	161,600,000	323,200,000	323,200,000	323,200,000	323,200,000	323,200,000	323,200,000	1,131,200,000
		58~62층	5	932,707,000	2,116,630,000	211,663,000	3,261,000,000	163,050,000	326,100,000	326,100,000	326,100,000	326,100,000	326,100,000	326,100,000	1,141,350,000
		63~66층	4	940,071,000	2,135,390,000	213,539,000	3,289,000,000	164,450,000	328,900,000	328,900,000	328,900,000	328,900,000	328,900,000	328,900,000	1,151,150,000
		5층	1	769,619,000	1,746,710,000	174,671,000	2,691,000,000	134,550,000	269,100,000	269,100,000	269,100,000	269,100,000	269,100,000	269,100,000	941,850,000
		6층	1	773,596,900	1,755,821,000	175,582,100	2,705,000,000	135,250,000	270,500,000	270,500,000	270,500,000	270,500,000	270,500,000	270,500,000	946,750,000
		7층	1	777,574,800	1,764,932,000	176,493,200	2,719,000,000	135,950,000	271,900,000	271,900,000	271,900,000	271,900,000	271,900,000	271,900,000	951,650,000
		8층	1	781,552,700	1,774,043,000	177,404,300	2,733,000,000	136,650,000	273,300,000	273,300,000	273,300,000	273,300,000	273,300,000	273,300,000	956,550,000
		9층	1	785,530,600	1,783,154,000	178,315,400	2,747,000,000	137,350,000	274,700,000	274,700,000	274,700,000	274,700,000	274,700,000	274,700,000	961,450,000
		10~14층	5	801,443,300	1,819,597,000	181,959,700	2,803,000,000	140,150,000	280,300,000	280,300,000	280,300,000	280,300,000	280,300,000	280,300,000	981,050,000
		15~19층	4	809,399,100	1,837,819,000	183,781,900	2,831,000,000	141,550,000	283,100,000	283,100,000	283,100,000	283,100,000	283,100,000	283,100,000	990,850,000
		20~24층	5	817,354,900	1,856,041,000	185,604,100	2,859,000,000	142,950,000	285,900,000	285,900,000	285,900,000	285,900,000	285,900,000	285,900,000	1,000,650,000
		25~29층	5	825,310,700	1,874,263,000	187,426,300	2,887,000,000	144,350,000	288,700,000	288,700,000	288,700,000	288,700,000	288,700,000	288,700,000	1,010,450,000
		30~34층	5	833,266,500	1,892,485,000	189,248,500	2,915,000,000	145,750,000	291,500,000	291,500,000	291,500,000	291,500,000	291,500,000	291,500,000	1,020,250,000
		35~39층	5	840,936,200	1,910,058,000	191,005,800	2,942,000,000	147,100,000	294,200,000	294,200,000	294,200,000	294,200,000	294,200,000	294,200,000	1,029,700,000
		40~44층	5	848,892,000	1,928,280,000	192,828,000	2,970,000,000	148,500,000	297,000,000	297,000,000	297,000,000	297,000,000	297,000,000	297,000,000	1,039,500,000
		45~47층	2	851,701,300	1,934,817,000	193,481,700	2,980,000,000	149,000,000	298,000,000	298,000,000	298,000,000	298,000,000	298,000,000	298,000,000	1,043,000,000
		48~52층	5	889,671,000	2,019,390,000	201,939,000	3,111,000,000	155,550,000	311,100,000	311,100,000	311,100,000	311,100,000	311,100,000	311,100,000	1,088,850,000
		53~57층	5	897,626,800	2,037,612,000	203,761,200	3,139,000,000	156,950,000	313,900,000	313,900,000	313,900,000	313,900,000	313,900,000	313,900,000	1,098,650,000
		58~62층	5	905,582,600	2,055,834,000	205,583,400	3,167,000,000	158,350,000	316,700,000	316,700,000	316,700,000	316,700,000	316,700,000	316,700,000	1,108,450,000
		63~66층	4	913,539,500	2,074,055,000	207,405,500	3,195,000,000	159,750,000	319,500,000	319,500,000	319,500,000	319,500,000	319,500,000	319,500,000	1,118,250,000
		5층	4	732,131,200	1,662,608,000	166,260,800	2,561,000,000	128,050,000	256,100,000	256,100,000	256,100,000	256,100,000	256,100,000	256,100,000	896,350,000
		6층	4	735,590,900	1,671,281,000	167,128,100	2,574,000,000	128,7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900,900,000
		7층	4	740,050,600	1,679,954,000	167,995,400	2,588,000,000	129,400,000	258,800,000	258,800,000	258,800,000	258,800,000	258,800,000	258,800,000	905,800,000
		8층	4	743,510,300	1,688,627,000	168,862,700	2,601,000,000	130,050,000	260,100,000	260,100,000	260,100,000	260,100,000	260,100,000	260,100,000	910,350,000
		9층	4	747,970,000	1,697,300,000	169,730,000	2,615,000,000	130,750,000	261,500,000	261,500,000	261,500,000	261,500,000	261,500,000	261,500,000	915,250,000
		10~14층	20	762,808,800	1,731,992,000	173,199,200	2,668,000,000	133,400,000	266,800,000	266,800,000	266,800,000	266,800,000	266,800,000	266,800,000	933,800,000
		15~19층	16	770,728,200	1,749,338,000	174,933,800	2,695,000,000	134,750,000	269,500,000	269,500,000	269,500,000	269,500,000	269,500,000	269,500,000	943,250,000
		20~24층	20	777,647,600	1,766,684,000	176,668,400	2,721,000,000	136,050,000	272,100,000	272,100,000	272,100,000	272,100,000	272,100,000	272,100,000	952,350,000
		25~29층	20	785,567,000	1,784,030,000	178,403,000	2,748,000,000	137,400,000	274,800,000	274,800,000	274,800,000	274,800,000	274,800,000	274,800,000	961,800,000
		30~34층	20	793,486,400	1,801,376,000	180,137,600	2,775,000,000	138,750,000	277,500,000	277,500,000	277,500,000	277,500,000	277,500,000	277,500,000	971,250,000
		35~39층	20	801,120,800	1,818,072,000	181,807,200	2,801,000,000	140,050,000	280,100,000	280,100,000	280,100,000	280,100,000	280,100,000	280,100,000	980,350,000
		40~44층	20	808,040,200	1,835,418,000	183,541,800	2,827,000,000	141,350,000	282,700,000	282,700,000	282,700,000	282,700,000	282,700,000	282,700,000	989,450,000

104동 1호	45~47층	8	815,959.600	1,852,764.000	185,276.400	2,854,000.000	142,700.000	285,400.000	285,400.000	285,400.000	285,400.000	285,400.000	285,400.000	285,400.000	998,900.000	
	48~52층	20	846,637.200	1,922,148.000	192,214.800	2,961,000.000	148,050.000	296,100.000	296,100.000	296,100.000	296,100.000	296,100.000	296,100.000	296,100.000	1,036,350.000	
	53~57층	20	854,557.700	1,939,493.000	193,949.300	2,988,000.000	149,400.000	298,800.000	298,800.000	298,800.000	298,800.000	298,800.000	298,800.000	298,800.000	1,045,800.000	
	58~62층	20	861,477.100	1,956,839.000	195,683.900	3,014,000.000	150,700.000	301,400.000	301,400.000	301,400.000	301,400.000	301,400.000	301,400.000	301,400.000	1,054,900.000	
	63~66층	16	869,396.500	1,974,185.000	197,418.500	3,041,000.000	152,050.000	304,100.000	304,100.000	304,100.000	304,100.000	304,100.000	304,100.000	304,100.000	1,064,350.000	
	104동 2호	5층	2	732,131.200	1,662,608.000	166,260.800	2,561,000.000	128,050.000	256,100.000	256,100.000	256,100.000	256,100.000	256,100.000	256,100.000	256,100.000	896,350.000
		6층	2	735,590.900	1,671,281.000	167,128.100	2,574,000.000	128,7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257,400.000	900,900.000
		7층	2	740,050.600	1,679,954.000	167,995.400	2,588,000.000	129,400.000	258,800.000	258,800.000	258,800.000	258,800.000	258,800.000	258,800.000	258,800.000	905,800.000
		8층	2	743,510.300	1,688,627.000	168,862.700	2,601,000.000	130,050.000	260,100.000	260,100.000	260,100.000	260,100.000	260,100.000	260,100.000	260,100.000	910,350.000
		9층	2	747,970.000	1,697,300.000	169,730.000	2,615,000.000	130,750.000	261,500.000	261,500.000	261,500.000	261,500.000	261,500.000	261,500.000	261,500.000	915,250.000
		10~14층	10	762,808.800	1,731,992.000	173,199.200	2,668,000.000	133,400.000	266,800.000	266,800.000	266,800.000	266,800.000	266,800.000	266,800.000	266,800.000	933,800.000
		15~19층	8	770,728.200	1,749,338.000	174,933.800	2,695,000.000	134,750.000	269,500.000	269,500.000	269,500.000	269,500.000	269,500.000	269,500.000	269,500.000	943,250.000
		20~24층	10	777,647.600	1,766,684.000	176,668.400	2,721,000.000	136,050.000	272,100.000	272,100.000	272,100.000	272,100.000	272,100.000	272,100.000	272,100.000	952,350.000
		25~29층	10	785,567.000	1,784,030.000	178,403.000	2,748,000.000	137,400.000	274,800.000	274,800.000	274,800.000	274,800.000	274,800.000	274,800.000	274,800.000	961,800.000
		30~34층	10	793,486.400	1,801,376.000	180,137.600	2,775,000.000	138,750.000	277,500.000	277,500.000	277,500.000	277,500.000	277,500.000	277,500.000	277,500.000	971,250.000
35~39층		10	801,120.800	1,818,072.000	181,807.200	2,801,000.000	140,050.000	280,100.000	280,100.000	280,100.000	280,100.000	280,100.000	280,100.000	280,100.000	980,350.000	
40~44층		10	808,040.200	1,835,418.000	183,541.800	2,827,000.000	141,350.000	282,700.000	282,700.000	282,700.000	282,700.000	282,700.000	282,700.000	282,700.000	989,450.000	
45~47층		6	815,959.600	1,852,764.000	185,276.400	2,854,000.000	142,700.000	285,400.000	285,400.000	285,400.000	285,400.000	285,400.000	285,400.000	285,400.000	998,900.000	
105동 1호		5층	2	697,185.200	1,583,468.000	158,346.800	2,439,000.000	121,950.000	243,900.000	243,900.000	243,900.000	243,900.000	243,900.000	243,900.000	243,900.000	853,650.000
		6층	2	700,741.700	1,592,053.000	159,205.300	2,452,000.000	122,600.000	245,200.000	245,200.000	245,200.000	245,200.000	245,200.000	245,200.000	245,200.000	858,200.000
	7층	2	705,297.100	1,600,639.000	160,063.900	2,466,000.000	123,300.000	246,600.000	246,600.000	246,600.000	246,600.000	246,600.000	246,600.000	246,600.000	863,100.000	
	8층	2	708,853.600	1,609,224.000	160,922.400	2,479,000.000	123,950.000	247,900.000	247,900.000	247,900.000	247,900.000	247,900.000	247,900.000	247,900.000	867,650.000	
	9층	2	712,410.100	1,617,809.000	161,780.900	2,492,000.000	124,600.000	249,200.000	249,200.000	249,200.000	249,200.000	249,200.000	249,200.000	249,200.000	872,200.000	
	10~14층	10	727,633.900	1,652,151.000	165,215.100	2,545,000.000	127,250.000	254,500.000	254,500.000	254,500.000	254,500.000	254,500.000	254,500.000	254,500.000	890,750.000	
	15~19층	8	734,746.900	1,669,321.000	166,932.100	2,571,000.000	128,550.000	257,100.000	257,100.000	257,100.000	257,100.000	257,100.000	257,100.000	257,100.000	899,850.000	
	20~24층	10	770,306.800	1,748,812.000	174,881.200	2,694,000.000	134,700.000	269,400.000	269,400.000	269,400.000	269,400.000	269,400.000	269,400.000	269,400.000	942,900.000	
	25~29층	10	777,418.700	1,765,983.000	176,598.300	2,720,000.000	136,000.000	272,000.000	272,000.000	272,000.000	272,000.000	272,000.000	272,000.000	272,000.000	952,000.000	
	30~34층	10	785,530.600	1,783,154.000	178,315.400	2,747,000.000	137,350.000	274,700.000	274,700.000	274,700.000	274,700.000	274,700.000	274,700.000	274,700.000	961,450.000	
	35~39층	10	792,357.500	1,799,675.000	179,967.500	2,772,000.000	138,600.000	277,200.000	277,200.000	277,200.000	277,200.000	277,200.000	277,200.000	277,200.000	970,200.000	
	40~44층	10	800,469.400	1,816,846.000	181,684.600	2,799,000.000	139,950.000	279,900.000	279,900.000	279,900.000	279,900.000	279,900.000	279,900.000	279,900.000	979,650.000	
	45~47층	4	807,582.400	1,834,016.000	183,401.600	2,825,000.000	141,250.000	282,500.000	282,500.000	282,500.000	282,500.000	282,500.000	282,500.000	282,500.000	988,750.000	
	48~52층	10	838,031.100	1,902,699.000	190,269.900	2,931,000.000	146,550.000	293,100.000	293,100.000	293,100.000	293,100.000	293,100.000	293,100.000	293,100.000	1,025,850.000	
	53~57층	10	845,143.000	1,919,870.000	191,987.000	2,957,000.000	147,850.000	295,700.000	295,700.000	295,700.000	295,700.000	295,700.000	295,700.000	295,700.000	1,034,950.000	
58~62층	10	853,254.900	1,937,041.000	193,704.100	2,984,000.000	149,200.000	298,400.000	298,400.000	298,400.000	298,400.000	298,400.000	298,400.000	298,400.000	1,044,400.000		
63~66층	8	860,367.900	1,954,211.000	195,421.100	3,010,000.000	150,500.000	301,000.000	301,000.000	301,000.000	301,000.000	301,000.000	301,000.000	301,000.000	1,053,500.000		
106동 1호	5층	1	704,683.200	1,600,288.000	160,028.800	2,465,000.000	123,250.000	246,500.000	246,500.000	246,500.000	246,500.000	246,500.000	246,500.000	246,500.000	862,750.000	
	6층	1	708,142.900	1,608,961.000	160,896.100	2,478,000.000	123,900.000	247,800.000	247,800.000	247,800.000	247,800.000	247,800.000	247,800.000	247,800.000	867,300.000	
	7층	1	712,602.600	1,617,634.000	161,763.400	2,492,000.000	124,600.000	249,200.000	249,200.000	249,200.000	249,200.000	249,200.000	249,200.000	249,200.000	872,200.000	
	8층	1	716,062.300	1,626,307.000	162,630.700	2,505,000.000	125,250.000	250,500.000	250,500.000	250,500.000	250,500.000	250,500.000	250,500.000	250,500.000	876,750.000	
	9층	1	720,522.000	1,634,980.000	163,498.000	2,519,000.000	125,950.000	251,900.000	251,900.000	251,900.000	251,900.000	251,900.000	251,900.000	251,900.000	881,650.000	
	10~14층	5	735,360.800	1,669,672.000	166,967.200	2,572,000.000	128,600.000	257,200.000	257,200.000	257,200.000	257,200.000	257,200.000	257,200.000	257,200.000	900,200.000	
	15~19층	4	743,280.200	1,687,018.000	168,701.800	2,599,000.000	129,950.000	259,900.000	259,900.000	259,900.000	259,900.000	259,900.000	259,900.000	259,900.000	909,650.000	
	20~24층	5	777,647.600	1,766,684.000	176,668.400	2,721,000.000	136,050.000	272,100.000	272,100.000	272,100.000	272,100.000	272,100.000	272,100.000	272,100.000	952,350.000	
	25~29층	5	785,567.000	1,784,030.000	178,403.000	2,748,000.000	137,400.000	274,800.000	274,800.000	274,800.000	274,800.000	274,800.000	274,800.000	274,800.000	961,800.000	
	30~34층	5	793,486.400	1,801,376.000	180,137.600	2,775,000.000	138,750.000	277,500.000	277,500.000	277,500.000	277,500.000	277,500.000	277,500.000	277,500.000	971,250.000	
	35~39층	5	801,120.800	1,818,072.000	181,807.200	2,801,000.000	140,050.000	280,100.000	280,100.000	280,100.000	280,100.000	280,100.000	280,100.000	280,100.000	980,350.000	
	40~44층	5	808,040.200	1,835,418.000	183,541.800	2,827,000.000	141,350.000	282,700.000	282,700.000	282,700.000	282,700.000	282,700.000	282,700.000	282,700.000	989,450.000	
	45~47층	2	815,959.600	1,852,764.000	185,276.400	2,854,000.000	142,700.000	285,400.000	285,400.000	285,400.000	285,400.000	285,400.000	285,400.000	285,400.000	998,900.000	
	48~52층	5	846,637.200	1,922,148.000	192,214.800	2,961,000.000	148,050.000	296,100.000	296,100.000	296,100.000	296,100.000	296,100.000	296,100.000	296,100.000	1,036,350.000	
	53~57층	5	854,557.700	1,939,493.000	193,949.300	2,988,000.000	149,400.000	298,800.000	298,800.000	298,800.000	298,800.000	298,800.000	298,800.000	298,800.000	1,045,800.000	
58~62층	5	861,477.100	1,956,839.000	195,683.900	3,014,000.000	150,700.000	301,400.000	301,400.000	301,400.000	301,400.000	301,400.000	301,400.000	301,400.000	1,054,900.000		
63~66층	4	869,396.500	1,974,185.000	197,418.500	3,041,000.000	152,050.000	304,100.000	304,100.000	304,100.000	304,100.000	304,100.000	304,100.000	304,100.000	1,064,350.000		
106동 2호	5층	1	764,356.000	1,736,040.000	173,604.000	2,674,000.000	133,700.000	267,400.000								

		7층	1	772,720,000	1,754,800,000	175,480,000	2,703,000,000	135,150,000	270,300,000	270,300,000	270,300,000	270,300,000	270,300,000	270,300,000	270,300,000	946,050,000
		8층	1	777,402,000	1,764,180,000	176,418,000	2,718,000,000	135,900,000	271,800,000	271,800,000	271,800,000	271,800,000	271,800,000	271,800,000	271,800,000	951,300,000
		9층	1	781,085,100	1,773,559,000	177,355,900	2,732,000,000	136,600,000	273,200,000	273,200,000	273,200,000	273,200,000	273,200,000	273,200,000	273,200,000	956,200,000
		10~14층	5	797,813,100	1,811,079,000	181,107,900	2,790,000,000	139,500,000	279,000,000	279,000,000	279,000,000	279,000,000	279,000,000	279,000,000	279,000,000	976,500,000
		15~19층	4	806,177,100	1,829,839,000	182,983,900	2,819,000,000	140,950,000	281,900,000	281,900,000	281,900,000	281,900,000	281,900,000	281,900,000	281,900,000	986,650,000
		20~24층	5	841,988,000	1,910,920,000	191,092,000	2,944,000,000	147,200,000	294,400,000	294,400,000	294,400,000	294,400,000	294,400,000	294,400,000	294,400,000	1,030,400,000
		25~29층	5	850,352,000	1,929,680,000	192,968,000	2,973,000,000	148,650,000	297,300,000	297,300,000	297,300,000	297,300,000	297,300,000	297,300,000	297,300,000	1,040,550,000
		30~34층	5	852,284,500	1,936,105,000	193,610,500	2,982,000,000	149,100,000	298,200,000	298,200,000	298,200,000	298,200,000	298,200,000	298,200,000	298,200,000	1,043,700,000
		35~39층	5	853,786,500	1,939,285,000	193,928,500	2,987,000,000	149,350,000	298,700,000	298,700,000	298,700,000	298,700,000	298,700,000	298,700,000	298,700,000	1,045,450,000
		40~44층	5	855,288,500	1,942,465,000	194,246,500	2,992,000,000	149,600,000	299,200,000	299,200,000	299,200,000	299,200,000	299,200,000	299,200,000	299,200,000	1,047,200,000
		45~47층	2	856,790,500	1,945,645,000	194,564,500	2,997,000,000	149,850,000	299,700,000	299,700,000	299,700,000	299,700,000	299,700,000	299,700,000	299,700,000	1,048,950,000
		48~52층	5	915,979,000	2,079,110,000	207,911,000	3,203,000,000	160,150,000	320,300,000	320,300,000	320,300,000	320,300,000	320,300,000	320,300,000	320,300,000	1,121,050,000
		53~57층	5	924,343,000	2,097,870,000	209,787,000	3,232,000,000	161,600,000	323,200,000	323,200,000	323,200,000	323,200,000	323,200,000	323,200,000	323,200,000	1,131,200,000
		58~62층	5	932,707,000	2,116,630,000	211,663,000	3,261,000,000	163,050,000	326,100,000	326,100,000	326,100,000	326,100,000	326,100,000	326,100,000	326,100,000	1,141,350,000
		63~66층	4	940,071,000	2,135,390,000	213,539,000	3,289,000,000	164,450,000	328,900,000	328,900,000	328,900,000	328,900,000	328,900,000	328,900,000	328,900,000	1,151,150,000
		101동 1호	67층	1	2,830,375,900	6,426,931,000	642,693,100	9,900,000,000	495,000,000	990,000,000	990,000,000	990,000,000	990,000,000	990,000,000	990,000,000	3,465,000,000
		102동 1호	67층	1	2,459,214,800	5,582,532,000	558,253,200	8,600,000,000	430,000,000	860,000,000	860,000,000	860,000,000	860,000,000	860,000,000	860,000,000	3,010,000,000
		103동 1호	67층	1	2,459,214,800	5,582,532,000	558,253,200	8,600,000,000	430,000,000	860,000,000	860,000,000	860,000,000	860,000,000	860,000,000	860,000,000	3,010,000,000
		104동 1호	48층	1	2,401,509,700	5,453,173,000	545,317,300	8,400,000,000	420,000,000	840,000,000	840,000,000	840,000,000	840,000,000	840,000,000	840,000,000	2,940,000,000
		105동 1호	67층	1	2,339,348,900	5,311,501,000	531,150,100	8,182,000,000	409,100,000	818,200,000	818,200,000	818,200,000	818,200,000	818,200,000	818,200,000	2,863,700,000
		106동 1호	67층	1	2,573,454,600	5,842,314,000	584,231,400	9,000,000,000	450,000,000	900,000,000	900,000,000	900,000,000	900,000,000	900,000,000	900,000,000	3,150,000,000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인지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단지 내 판매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층수는 건립 동의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입니다.
-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50% 이상 달한 때(단,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입주 전(세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본 주택에 대한 청약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7일)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으며, 동·호수는 주택형 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 상기 공급가격의 항목별 공사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사업주체가 장애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중도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시스템 에어컨 등)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의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 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분 (약식표기)	84	104A	104B	104C	104D	125A	125B	125C	125D	154	합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0	0	0	0	0	0	0	0	2
	장애인 (부산광역시)	4	0	0	0	0	0	0	0	0	4
	중소기업 근로자	4	0	0	0	0	0	0	0	0	4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2	0	0	0	0	0	0	0	0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2	16	24	12	4	48	4	4	12	68	204
신혼부부 특별공급	27	0	0	0	0	0	0	0	0	0	27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4	7	3	1	14	1	1	3	20	57
생애최초 특별공급	10	0	0	0	0	0	0	0	0	0	10
합계	64	20	31	15	5	62	5	5	15	88	31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 가능 (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 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 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 신청 가능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 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 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 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table border="1" data-bbox="309 592 2121 802"> <thead> <tr> <th colspan="2">구분</th> <th>처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2">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td> <td>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td> </tr> <tr> <td rowspan="2">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td> <td>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td> <td>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td> </tr> <tr> <td>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td> <td>모두 부적격 처리</td> </tr> </tbody> </table>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p>■ 외국인인 주민등록법 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본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의료대부팀 ■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20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배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 (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한부모 가족	5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 청약 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 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2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3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합니다.

※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②순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합니다.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 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 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당첨자 선정방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7.1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 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	--	--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5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 산정기준 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가점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점상한</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점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수</th> <th style="text-align: center;">가점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9" style="text-align: center;">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9" style="text-align: center;">32</td> <td style="text-align: center;">만 30세 미만 미혼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0</td> <td style="text-align: center;">8년 이상 ~ 9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년 이상 ~ 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4</td> <td style="text-align: center;">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년 이상 ~ 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6</td> <td style="text-align: center;">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년 이상 ~ 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8</td> <td style="text-align: center;">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년 이상 ~ 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8</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년 이상 ~ 6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d style="text-align: center;">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년 이상 ~ 7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4</td> <td style="text-align: center;">15년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7년 이상 ~ 8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6</td> <td></td> <td></td> </tr> <tr>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②부양가족수</td> <td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35</td> <td style="text-align: center;">0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5</td> <td style="text-align: center;">4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d style="text-align: center;">5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3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d style="text-align: center;">6명 이상</td> <td style="text-align: center;">3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명</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17</td> <td style="text-align: center;">6개월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8년 이상 ~ 9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6개월 이상 ~ 1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 style="text-align: center;">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 style="text-align: center;">11</td> </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1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p> <p>-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p> <p>※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p>■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p> <p>-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p> <p>- 나. 1인 가구 (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p> <p>*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됩니다.</p> <p>*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본 주택은 60㎡ 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p> <p>*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p> <p>■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p> <p>*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합니다.</p> <p>**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p> <p>■ ①소득구분</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30%)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됩니다.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합니다.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7.1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비교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인 성인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일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 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 1,76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당첨자 선정방법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 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합니다.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가점제 적용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p> <p>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p>

	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비고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p>-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구분	내용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p>-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p>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 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border="1" data-bbox="286 1248 2094 1401"> <thead> <tr> <th>조항</th> <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주거전용면적</th>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 <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60㎡ 이하</td> <td>1억 6천만원</td> <td>1억원</td> </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 <td>단독주택</td> <td rowspan="3">85㎡ 이하</td> <td rowspan="3">5억원</td> <td rowspan="3">3억원</td> </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 </tr> </tbody>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p>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p> <p>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p> <p>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p> <p>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p> <p>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

IV 청약 신청 및 당첨자 발표

■ 청약 신청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 신청 완료
- 청약 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 (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 청약 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 신청 취소 완료
- 청약 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 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 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 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방법 및 절차 (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 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합니다.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 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 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기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29.(화) ~ 2025.08.07.(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7.29.(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팸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팸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 당첨자(정당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

구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일정	서류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2025.08.04.(월) ~ 2025.08.08.(금) (10:00 ~ 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8번지 - 구비서류 등 지참 방문
	일반공급		
예비 입주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은 건본주택 방문 접수 예정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해당지역 거주기간, 주택소유,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의 경우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소명자료 추가제출 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이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서류 미제출로 자격 확인이 안될 경우 계약일에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 신청자로 봄)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견본주택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신청 내용과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할 때까지 계약서 발급이 되지 않으며, 미소명 시에는 부적격자임을 확인하여야 최종 부적격 처리(청약 통장 부활)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해 미확인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여 부적격이 아닌 일반 당첨자로 분류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추첨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 <표1> 특별공급(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		① 특별공급 신청서	본인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견본주택에 비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접수 시 제출)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② 서약서 및 확약서	본인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견본주택에 비치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견본주택에 비치
	○		④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⑤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⑥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⑦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⑧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⑩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⑪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본 주택의 해당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에 충족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⑫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⑬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		⑭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청약홈에서 발급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건본주택 방문 접수 시 제출) •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①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②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 체류 유무 확인 ※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기관추천 특별공급	○		①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①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
		○	②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④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⑦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 산정 시,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을 위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⑧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	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자녀 :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⑩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①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본인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또는 자녀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④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⑤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
		○	⑥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⑦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⑧ 소득증빙 서류 (<표2> 참고)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⑩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⑪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대상자 중 전년도부터 무소득자로 무소득 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	
	○	⑫ 부동산 소유현황 (<표4> 참고)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㉓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
	○		②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신청자(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 한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필수 제출(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약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필수 제출
		○	⑥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 만 30세 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자녀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⑧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의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⑩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을 신청한 경우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	⑪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⑫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 자격요건 검증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 (혼인신고일, 자녀수, 월평균 소득 등)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②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⑥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⑦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
		○	⑧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	⑨ 소득증빙 서류 (<표2> 참고)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포함)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단,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등본상에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되지 않은 경우 가구원수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⑩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Fax 수신문서 제출가능 / ※ 직장가입 및 지역가입 내역, 과거이력 포함하여 발급)
		○	⑪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⑫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대상자 중 전년도부터 무소득자로 무소득 임을 입증해야 되는 경우
		○	⑬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표3> 참고)	본인	•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하며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 우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
		○	⑭ 부동산 소유현황 (<표4> 참고)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건본주택에서 조회내역 확인(본인 및 세대원 전원 공동인증서 필수 지참)
제3자 대리인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청 시 추가사항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제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2>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계속 휴직으로 월평균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 출산휴가 기간 중 고용보험을 수령한 경우 출산 전·후 급여신청서(확인서)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 계산하여 추정함	①, 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② 전년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직인날인 된 월별급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국민연금 가입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모집공고일 이전 가입한 경우만 인정) ③ 국민연금 미가입자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모집공고일 이전 신고분만 인정)	① 세무서 또는 등기소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③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 ③ 전년도 재무제표	① 세무서 ② 세무서, 해당직장 ③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① 해당 직장, 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세무서,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 ② 사실증명 (신고사실 없음)	① 견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3>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납부 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세무서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납부내역증명 포함/종합소득세 납부자) 과거 1년 이내 및 해당년도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 환급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세무서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4>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 제출서류 (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 이음
부동산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천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

▣ <표5>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공동서류	○		① 서약서 및 확약서	본인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
	○		③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④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⑤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⑥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⑦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설정하여 발급(개명자는 개명 전 서류 포함)
		○	⑩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본 주택의 해당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에 충족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⑪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분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⑫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 주민등록표등분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
		○	⑬ 전세피해자 확인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피해자 낙찰주택 소유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 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 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①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②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해외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계속하여 90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		③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및 미성년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 체류 유무 확인 ※ 발급기간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가점제	○		①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건본주택에 비치
		○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③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등본상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존속 생년월일로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⑦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 부양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⑧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⑨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직계비속 생년월일로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	⑩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⑪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⑫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존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피부양 직계비속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사항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르엘 리버파크 센텀 견본주택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①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②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축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단, 최저가점과 동일한 경우에는 최저가점과 동일한 점수를 가진 신청자 모두가 당첨된 경우에만 정당당첨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동일 점수 신청자 중 일부는 당첨되고 일부는 낙첨(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정당당첨자로 인정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 체결 기간	계약 체결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8.11.(월) ~ 2025.08.13.(수) / 10:00 ~ 16:00	르엘 리버파크 센텀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8번지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금 및 수표 수납 불가)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103동 703호 계약자 → '1030703홍길동')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②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③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④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 발급용)]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⑤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르엘 리버파크 센텀 견본주택에 비치
	○		⑥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본인	• 해당 세대의 공급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한 전자수입인지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1/2씩 균등 부담 <수입인지 구입처> ①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②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⑦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 계약 시	○		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②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르엘 리버파크 센텀 견본주택에 비치
	○		③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인지세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https://www.e-revenuestamp.or.kr>)_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 구매금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 10억원 초과(35만원)
-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계약금	부산은행	101-2089-6282-03	(주)하나자산신탁
	중도금, 잔금	부산은행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주)하나자산신탁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부산은행, 101-2089-6283-00, 예금주 (주)하나자산신탁]로 관리됩니다.
- 지정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상기 관리계좌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미체결, 과오납 등으로 환불 신청 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당첨자는 견본주택 내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계약진행 등의 시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당사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세대원,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부적격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이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부적격 당첨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건 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특례 제외)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정할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당첨자)로 선정된 주택의 당첨자 지위가 우선시 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무효화 됩니다. 단, 예비입주자로서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시기가 다른 주택의 당첨일보다 빠른 경우 추가입주자 선정이 유효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등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되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알선 조건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지정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알선할 예정입니다. 단,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 본 아파트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은 계약일 이후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선정합니다.
-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약정 기간은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와 대출 취급기관이 별도 협약한 대출 만기일까지입니다.
- 중도금 대출 이자 납부는 대출개시일부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발생한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시행위탁자가 대납하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시행위탁자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며, 이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관련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을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시행위탁자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도금 대출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실입주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대출금 전액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해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은 제1금융권 기관으로 선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기관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선정 일정은 정부 정책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금 납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계약자는 시행위탁자 또는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출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대출을 받은 경우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 다주택자, 법인,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분양사무소(건본주택)는 중도금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의 개별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 상담(전화상담 포함)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Ⅶ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발코니 미확장 요구 및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 금액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시공 중으로 발코니 비확장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변경 등 일체의 추가공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요구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 세대내 시설은 확장공사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입주 후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입주자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입주 후 발코니를 임의로 개별 변경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안방 앞 발코니)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타세대의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가스입상배관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위치에 따라 유리난간이 포함된 이중창 또는 난간이 없는 이중창(또는 단창)이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일러가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가스입상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실시공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 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형태/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비난방구역으로 수전류, 배관류, 배수트랩 등은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탁기가 설치되는 다용도실에는 세탁 및 배수용 수직배관 또는 상부세대 세탁 및 배수용 수평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1) 시스템 에어컨

① 시스템 에어컨 (프리미엄 기본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주관사	제조사	실내기 (개소)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	백송홀딩스	LG	3개소	거실, 주방, 침실 1	5,368,000	536,800	4,831,200
			5개소	전실	8,349,000	834,900	7,514,100
104전타입			3개소	거실, 주방, 침실 1	5,830,000	583,000	5,247,000
			5개소	전실	8,569,000	856,900	7,712,100
125전타입			3개소	거실, 주방, 침실 1	6,248,000	624,800	5,623,200
			6개소	전실	10,208,000	1,020,800	9,187,200
154			3개소	거실, 주방, 침실 1	6,314,000	631,400	5,682,600
			6개소	전실	11,264,000	1,126,400	10,137,600
244			3개소	거실, 주방, 침실 1	10,351,000	1,035,100	9,315,900
			8개소	전실	16,621,000	1,662,100	14,958,900

② 시스템 에어컨 (프리미엄 고급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주관사	제조사	실내기 (개소)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	백송홀딩스	LG	3개소	거실, 주방, 침실 1	6,083,000	608,300	5,474,700
			5개소	전실	9,086,000	908,600	8,177,400
104전타입			3개소	거실, 주방, 침실 1	6,226,000	622,600	5,603,400
			5개소	전실	9,724,000	972,400	8,751,600
125전타입			3개소	거실, 주방, 침실 1	6,710,000	671,000	6,039,000
			6개소	전실	11,594,000	1,159,400	10,434,600
154			3개소	거실, 주방, 침실 1	6,853,000	685,300	6,167,700
			6개소	전실	12,771,000	1,277,100	11,493,900
244			3개소	거실, 주방, 침실 1	12,562,000	1,256,200	11,305,800
			8개소	전실	18,832,000	1,883,200	16,948,800

• 시스템 에어컨 관련 유의사항

- 시행위탁사(백송홀딩스)에서 진행하는 추가 선택품목으로 시공사(롯데건설)와 무관하며, 추후 하자관련 사항은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시행위탁사(백송홀딩스)에서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벽걸이형), 각 침실(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안방, 각 침실)은 설치되지 않으며, 상기 시스템 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 (거실, 안방, 각 침실)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 환기 디퓨저의 위치, 스프링클러의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 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및 실외기는 동일 평형 및 동일 실별, 동일한 위치 이더라도, 엘지, 삼성 등 제조사에 따라 용량 및 성능이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냉매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실외기실 미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2) 가전기기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주관사	품목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 104전타입	롯데건설	주방 유럽산 인덕션	디트리쉬	2,640,000	264,000	2,376,000
	전타입	롯데건설	주방 13인치 액정TV	새로닉스	330,000	33,000
전타입	백송홀딩스	1도어 디자인 냉장고+냉동고+ 김치냉장고	삼성 비스포크	5,676,000	567,600	5,108,400
			LG 오브제	5,742,000	574,200	5,167,800

• 가전기기 관련 유의사항

- 시행위탁사(백송홀딩스)에서 진행하는 추가 선택품목(냉장고+냉동고+김치냉장고)은 시공사(롯데건설)와 무관하며, 추후 하자관련 사항은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옵션 가전은 B2B 전용 모델로, 시중 판매 B2C 모델과 외형은 유사하나 내부 사양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은 제품 설치와 원활한 환기를 위해 후면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며, 구조상 뒷부분이 벽면에 밀착되지 않으며, 이는 정상 시공 기준입니다.
-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공간은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제품이 제공되는 가구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냉장고의 돌출 정도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단지 배치에 따라(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 위치)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의 도어 오픈 방향은 고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기본 및 옵션품목 쿡탑은 동일한 상판 타공 치수로 시공되지만, 입주자 개별 구매 제품과 규격이 달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타입 주방 13인치 액정TV 옵션 미선택시 10인치 주방TV가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 84, 104(A,B,C,D)타입의 옵션 주방 유럽산 인덕션 미선택시 국산 인덕션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3) 현관중문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주관사	품목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 104전타입	롯데건설	스윙 중문	(1VENT+1FIX)	1,430,000	143,000	1,287,000
125전타입, 154, 244		슬라이딩 중문	3연동 (2SLIDING+1FIX)	1,430,000	143,000	1,287,000

• 현관중문 관련 유의사항

- 현관 중문 미선택 시, 중문들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현관 중문의 틈으로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성능을 포함하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 현관 중문은 5T 강화유리로 시공되나, 물리적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규격, 하드웨어 사양, 컬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의 개폐 방향은 세대의 단지 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 미선택 시 천장 몰딩, 신발장 케이싱, 디딤판, 벽 마감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마감재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주관사	설치 위치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	롯데건설	거실 아트월	유럽산 세라믹 타일	5,280,000	528,000	4,752,000
104전타입				6,270,000	627,000	5,643,000

• 마감재 관련 유의사항

- 주택형별 마감 구성은 평면 타입별 콘셉트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 하는 품목으로써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의 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 및 패턴이 건본주택에 시공된 품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84, 104타입의 옵션 세라믹 거실 아트월은 건립세대 104A 타입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타일은 자재 고유의 물성으로 인해 소량의 휨(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세라믹 대형 아트월 타일은 자재 양중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세대 디자인에 맞춰 컷팅 시공되며, 이에 따라 타일의 나누기선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트월 타일은 줄눈 없이 시공되며, 자재 특성상 이음부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트월 타일의 코너부는 시공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코너비드로 마감됩니다.
- 아트월 타일은 자재 특성과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패턴 연속성과 무관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5) 가구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주관사	설치위치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	롯데건설	주방	유럽산 주방가구_해커 (도장마감) / 유럽산 싱크볼, 포세린 상판·벽 포함 / 유럽산 아일랜드 후드	36,190,000	3,619,000	32,571,000
		침실1 드레스룸	벽판넬 드레스룸 조명형 시스템가구	2,530,000	253,000	2,277,000
104전타입		주방	유럽산 주방가구_해커 (도장마감) / 유럽산 싱크볼, 포세린 상판·벽 포함 / 유럽산 아일랜드 후드	38,940,000	3,894,000	35,046,000
		침실1 드레스룸	벽판넬 드레스룸 조명형 시스템가구	4,180,000	418,000	3,762,000
125전타입		침실1 드레스룸	벽판넬 드레스룸 조명형 시스템가구, 유리 슬라이딩 도어	7,260,000	726,000	6,534,000
154		침실1	수납 강화형 붙박이장	3,630,000	363,000	3,267,000
		침실2	가족실형 슬라이딩 도어	440,000	44,000	396,000
		침실1, 침실2	디럭스 마스터룸형 (내부 순환동선 + 침실2 조명형 유리 장식장)	4,620,000	462,000	4,158,000
		침실1	벽판넬 드레스룸 조명형 시스템가구	5,720,000	572,000	5,148,000
244		침실1	벽판넬 드레스룸 조명형 시스템가구	11,330,000	1,133,000	10,197,000

• 가구 관련 유의사항

- 주택형별 마감 구성은 평면 타입별 콘셉트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 하는 품목으로써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의 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가 견본주택에 시공된 품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습니다.
- 84, 104타입의 옵션 유럽산 주방가구는 건립세대 104A 타입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각 주택형의 특성에 따라 수납구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84타입의 옵션 유럽산 주방가구의 칼라는 평면과 기타 마감과 어우러지도록 화이트톤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 84, 104 타입의 유럽산 주방가구 옵션 미선택시 주방가구의 레이아웃이 견본주택 104A에 설치되어있는 형태와 상이하며, 기본형 평면을 통해 해당 구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84, 104 타입의 유럽산 주방가구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 설치되며, 이에 따라 본 시공 시 연결 부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방 후드는 조리시 발생하는 연기 및 냄새 배출을 위한 강제 배기 장치로, 사용 시 풍량 및 풍속에 따라 일정 수준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볼의 오버플로우 위치는 본 공사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시스템가구는 단위세대의 평면계획에 따라 설치 위치, 디자인, 내부 수납 기능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및 옵션으로 설치되는 가구는 마감재 시공, 전기 배선 등과 연계되어 설치되므로, 설치 완료 후에는 이동이 불가합니다.
- 가구의 마감·규격·구성은 인허가 도서와 다를 수 있으며, 하자 방지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의 천장, 바닥, 배면 등 비노출면은 별도의 마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구 하드웨어 및 디테일은 품질 확보를 위해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 벽판넬 드레스룸 조명형 시스템가구의 선반 높이는 편의성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125타입의 벽판넬 드레스룸 조명형 시스템가구 옵션 선택시 벽판넬 드레스룸 조명형 시스템가구와 유리슬라이딩 도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실의 스위치의 위치가 조정됩니다.
- 154타입의 침실1 수납 강화형 붙박이장 옵션 선택 시 건립세대 154 타입 침대 배치 부위(화장대, 벽 기둥사이)에 시공됩니다.
- 154타입의 침실2 가족실형 슬라이딩 도어 옵션 선택시 벽체+침실도어(목문)가 삭제되고 유리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되며, 해당 실의 스위치의 위치가 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된 154타입은 디럭스 마스터룸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해당 옵션은 침실1+침실2를 통합하여 내부 순환동선과 침실2 조명형 유리장식장으로 구성되는 상품입니다. 또한, 침실1 도어의 위치가 아트월 부분으로 조정되는 구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옵션 미 선택시의 침실1 도어 위치를 기본형 평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44타입의 벽판넬 드레스룸 조명형 시스템가구 옵션 선택시 침실1의 드레스룸(1,2)의 구성이 벽판넬 드레스룸 조명형 시스템가구로 구성되며, 실의 내부 창호 및 커튼월 부위를 제외한 부위에 가구가 구성됩니다.

6) 설비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제조사	주관사	품목	개소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전타입	힘펠	롯데건설	현관 청정 시스템	1SET	현관 천장(에어샤워), 현관 신발장내부(에어클리너)	660,000	66,000	594,000
84, 104전타입	대림바스	롯데건설	마감고급형욕실1,2유립산벽타일, 국산세면기 일체형 하부장	2EA	욕실1, 욕실2	1,870,000	187,000	1,683,000
	힘펠	롯데건설	욕실 복합 환기팬	2EA	욕실1, 욕실2	990,000	99,000	891,000
	네오아미코	백송홀딩스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1EA	침실1 드레스룸 천장	1,650,000	165,000	1,485,000
125전타입	이낙스	롯데건설	세면기 일체형 하부장 (서랍)	2EA	욕실1, 욕실2	1,540,000	154,000	1,386,000
	힘펠	롯데건설	욕실 복합 환기팬	2EA	욕실1, 욕실2	990,000	99,000	891,000
	네오아미코	백송홀딩스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1EA	침실1 드레스룸 천장	1,650,000	165,000	1,485,000
154	이낙스	롯데건설	세면기 일체형 하부장 (서랍)	1EA	욕실1	770,000	77,000	693,000
	힘펠	롯데건설	욕실 복합 환기팬	2EA	욕실1, 욕실2	990,000	99,000	891,000
	네오아미코	백송홀딩스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1EA	침실1 드레스룸 천장	1,650,000	165,000	1,485,000
244	이낙스	롯데건설	세면기 일체형 하부장 (서랍)	2EA	욕실2, 욕실3	1,540,000	154,000	1,386,000
	힘펠	롯데건설	욕실 복합 환기팬	3EA	욕실1, 욕실2, 욕실3	1,540,000	154,000	1,386,000
	네오아미코	백송홀딩스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2EA	침실1 드레스룸 천장	3,300,000	330,000	2,970,000

• 설비 관련 유의사항

- 시행위탁사(백송홀딩스)에서 진행하는 추가 선택품목(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은 시공사(롯데건설)와 무관하며, 추후 하자관련 사항은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현관 청정 시스템

- 현관 청정 시스템은 천장형 빌트인 청정기와 가구 내 설치된 에어클리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현관 청정 시스템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자동 연동 사용 및 리모컨 작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청정 시스템 설치 시 같은 주택형이라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청정 시스템 설치 시 현관 센서등의 위치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현관 청정 시스템 미설치시 가구내부 수납 구성이 조정됩니다.

• 드레스룸 천장형 제습기

- 천장형 제습기는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는 타입 및 설치 공간이 면적에 따라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제습기 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등기구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기팬

- 욕실 복합 환기 팬은 무선 리모컨으로 작동되며, 사용 시 작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복합 환기 팬 선택 시, 기본 제공 환기팬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복합 환기 팬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천장 내 설비 위치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면기 일체형 하부장

-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는 국산과 외산의 세면기 디자인과 하부장의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 마감고급형욕실1.2 유럽산 벽타일

- 옵션 84, 104타입의 욕실1.2 유럽산 벽타일은 104A 타입에 기본형 마감이 전사되어 있으니 옵션 선택 시 해당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미선택시 아시아산 벽타일이 기본형으로 시공됩니다.

7) 전기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주관사	품목	설치 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지정일
84	롯데건설	조명 스타일업	- 거실우물, 침실 커튼박스 : 간접등 - 거실, 침실1 : 디밍형 고급 매입등 - 복도 : 고급 매입등 - 식탁 : 직·간접 직부등 - 침실 : 직·간접 직부등	8,470,000	847,000	7,623,000
104전타입				8,690,000	869,000	7,821,000
125전타입				9,130,000	913,000	8,217,000
154				11,330,000	1,133,000	10,197,000
244				14,520,000	1,452,000	13,068,000

• 전기 관련 유의사항

- 타 추가 선택품목 계약 여부에 따라 등기구 위치 및 수량 등이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스펙,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	부산은행	101-2092-6051-00	롯데건설(주)
	잔금	부산은행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롯데건설(주)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공사대금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부산은행, 101-2092-6051-00, 예금주 롯데건설(주)]로 관리됩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유상옵션 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였음에 동의합니다.
- 상기 유상 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며,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와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관련 주요사항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설계 공지 내용
공통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사업지 북측 주출입구에는 폭 25m도로, 동측에는 선하지 및 광역전철의 동해선 재송역, 30m도로, 서측에는 45m도로, 남측에는 30m도로가 계획 되어있음.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도로는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실 시공 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사업지 북측에는 기 준공된 해운대 센텀 e편한세상이 입지 해 있으며, 25m도로는 추후 개설될 예정에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인·허가청의 인·허가사항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준공 시 확정(분할)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사업지 북측 및 동측에 기부채납 부지인 소공원1, 2가 있으며 구역경계에 포함되나, 대지경계에서 제외되었으며, 추후 인·허가 진행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동측 구역경계 외의 선하지 및 동해선 재송역 지상철이 있으며, 남측 구역경계 외의 원형육교 예정이 있어 이로 인한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인·허가청의 인·허가 사항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내용임.
	선하지, 행복체육공원, 원형육교의 CG, 이미지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후 인·허가청의 인·허가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빛공해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사업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아니함.
	세대 당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사업지 주변도로는 기부채납 부지로 단지 내 소유가 아니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착공 및 분양 이후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 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 시공 시 카탈로그,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진출입동선, 형태, 높이, 조경계획,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당 현장의 소방도로는 해운대로에서 동해선 하부로 진입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인허가사항에 따라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동측에는 구역 외에는 광역전철 동해선 있으며, 도로철도 사전영향검토 상 법적기준을 만족하여 방음벽 설치가 설계되지 않았으나, 사용검사 단계에서 실/내외 소음측정 시 법적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음벽이 추가 설치될 수 있음.	
사업지 서측 지하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및 진출입구가 있음. 공고일 기준 위 도로 터널 시설물의 관리를 위해 일부 부지에 구분지상권(지하)이 설정되어 있으나, 해당 부지는 셋백(setback) 구간으로서 준공 후 기부채납될 예정임. 위 각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대지 주위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사도 및 레벨계획, 형태, 디자인, 시설과 용지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카달로그, CG,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추후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구역경계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쌓기, 산벽쌓기,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 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시공방법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
인·허가	당 단지는 2023년 2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으로 인해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고, 판매시설의 레이아웃 조정, 외관 변경 등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인·허가(설계변경 포함)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
	건물의 외관, 조경, 식재디테일은 인·허가 및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본 공사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준공 시 소방관련부서 또는 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외부 조경 라인, 동선 및 단위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한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및 인허가사항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당 현장의 공동주택은 녹색건축 예비인증 우수(그린2)등급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획득함.
		당 현장은 BF인증 대상 사업장으로, BF인증의거 커뮤니티 시설 및 관련 인허가 관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지역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제3항에 따른 상업지역으로서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도로의 소음과 관련한 민원은 제기할 사항이 아님.
교육		학생배치 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여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당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설치 및 운영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관할 지자체와 체결할 예정임.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건본주택		건본주택은 104A, 125A, 154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계약자의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단지 배치에 따라 건본주택과 달리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건본주택 내 단위세대는 기본품목, 옵션품목, 전시품목이 혼합 시공되어 있습니다. 실제 시공은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자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건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 홈페이지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함.
		건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형을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음.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제시된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CG)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뮬레이션 자료로, 청약 및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건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수급 불안, 제조사 도산 등의 사유로 동질 또는 동급 이상의 다른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 기간 공개되며,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감 자재 등은 촬영 및 기록 보관할 예정임.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미건립 주택형의 내부 치수, 마감재 사양, 옵션 형태 등은 건본주택 건립 주택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이의 제기는 불가함.
		건본주택에 설치된 가전제품 및 가구와 다른 용량(규격)의 제품을 계약자가 설치할 경우,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가 불가할 수 있음.
		단위세대 현관 외부의 건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품품목 및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적용되는 단위세대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현관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
		단위세대 현관에 설치된 금속프레임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방화문틀과 방화문으로 시공됨.
		단위세대에 설치된 조명, 스위치, 통신·제어기기 등은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되거나 동급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음.
		단위세대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용 조명기구는 연출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단지	공통사항	단위세대 침실에 설치된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관리가 용이한 노출된 장소에 설치되며, 입주 후 개인의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단위세대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건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시공 위치와 사양 등이 상이함.
		단위세대에 안내된 우·오수 배관, 선홍통, 수전,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 등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건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보안용 CCTV, 소화기는 건본주택용으로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4층의 각 동별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 및 외측벽선에서 돌출된 구조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본 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큰, 외부시설물(난간디테일, DA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4층 주동의 동출입구 및 주동의 외부 저층부 1개층 높이(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임. 판매시설의 외부 입면은 석재 등 마감이며, 부대복리시설은 일부 석재 및 강판이 적용되었으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 수 있음.
추후 옥외광고물 심의(자문) 및 야간경관심의(자문)에 따라 BI 위치 및 개소 및 조명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가로등, 동출입구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물등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당 단지는 거실의 커튼월과 침실의 창호가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으로 거실과 침실로의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차량, 이사짐, 구급 차량 등이 단지 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일부 단지 내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에 불편할 수 있음.		

<p>우편물보관함은 지상 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규모, 형태, 개폐형식(일면, 양면)은 상이할 수 있음.</p>
<p>자전거 보관소는 지상 1층 각 동 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규모, 형태 등은 상이할 수 있음.</p>
<p>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p>
<p>단지 북측 주출입구에 차량 회차동선이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p>
<p>4층 주거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될 수 있음.</p>
<p>포디엄 및 브릿지 구간의 난간은 추후 위치, 규모, 형태, 마감 등 변경될 수 있음.</p>
<p>지상 1층의 마감은 현장 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 협의에 따라 추후 패턴, 형태, 마감재, 디자인 등 변경될 수 있음.</p>
<p>4층 주거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될 수 있음.</p>
<p>지하층에 제연환풍이 계획되고 1층에 제연환풍 급기 DA가 설치되어 일부 주동출입구 및 저층 판매시설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추가 그릴 등이 설치 예정임. 추후 실 시공 시 환풍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음. 각 동 1층에는 DA(제연 DA 포함),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이 설치되어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질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고,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 후 관리규약에 따름.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p>
<p>판매시설 전·후면에 판매시설 출입을 위한 계단 및 경사로가 추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 동선에 간섭이 생길 수 있음.</p>
<p>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 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p>
<p>4층 단지 내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식재기반 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 등)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 세대에 일조,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p>
<p>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 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p>
<p>4층의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포켓정원 등), 보행자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지하 2층의 주동홀 인근에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설치되며, 4층 및 각 층별 주동홀 인근에 생활 폐기물 보관실이 설치되며 사용시 소음 및 냄새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p>
<p>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수경시설에는 수질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음용할 수 없으며, 관상용 시설의 경우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음.</p>
<p>지상 2층 및 3층 상단에 일부구간에 녹화를 위한 식재가 될 예정이나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거주자 이용이 불가한 공간이며,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준공 후 관리규약에 따르고, 해당 녹화구간의 위치, 형태,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p>
<p>단지 내 옹벽, 건축데크 상부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 계획되어, 인접한 일부 세대의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공사 여건 및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의하여 식재, 시설물,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음.</p>
<p>1층의 외부공간은 주동 출입구 인근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 공사 여건 및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의하여 식재, 시설물, 포장, 동선 등이 조경계획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음.</p>
<p>지하 2층의 단지 내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장, 지하 1층의 판매시설용 분리 수거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어린이집용 쓰레기보관함은 별도 설치 계획되어 있지 않음. 본 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개선, 외부조경 공간의 배치 개선 시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 크기 및 디자인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함은 각 동별로 설치되나 동별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인접할 경우 통합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각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는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 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 판매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판매시설 주차면 또는 인근 건축 데크 하부 등 실내에 설치되어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쓰레기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는 시공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 해질 수 있음.</p>
<p>단지 북측 25m 도로변 주출입구에는 차량 회차공간이 있으며, 부출입구에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음. 별도의 키즈 스테이션은 설치하지 않음. 1층 차량 회차공간은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차량동선, 차량 대기공간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시와 다르게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p>
<p>당 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일반상업지역으로 일조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인동거리 등을 해당 지역지구 및 관련법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용도는 공동주택,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오피스텔)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용도가 변경될 수 있음.</p>
<p>당 단지의 주동 외관색채, 외벽줄눈 특화외장재의 종류 및 적용위치, 옥상구조물의 형태 및 마감재, 옥상, 벽 등 기타 설치되는 태양광 집광판의 위치 및 각도, 주동 출입구의 형태 및</p>

	<p>마감재, 단지 출입구 문주의 형태 및 마감재,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미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모양 등) 등 단지 외관의 전반적인 디자인이 사업주체 결정에 따라 착공도서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계획(안) 대비 디자인개선을 목적으로 변경 및 추가되어 시공될 수 있음. 단, 인·허가 과정 상 협의의견 및 본 공사 시 디자인 개선을 목적으로 추가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p> <p>쓰레기이송설비용 배기덕트가 이송설비 기계실에서 가까운 101동 최고층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p> <p>당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능력등급 MMI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22(g)로 설계되어 있음. (내진 I 등급)</p> <p>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블루투스 연동은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수신거리 및 기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p> <p>원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p> <p>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탑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p> <p>각 동별 옥상부 및 벽면 등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반사 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 등이 일부 세대에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용량 등은 인·허가 관청 협의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향후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p> <p>홈네트워크 서버의 경우 고정IP(전용회선) 사용으로 관리 비용이 발생됨.</p> <p>스마트홈 IoT 사업자의 서비스가 적용될 경우 입주지원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상 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 음성인식 스피커는 별도 구매 품목이며, 스마트홈 IoT 연동 가전제품은 서비스사업자와 제휴된 가전에 한해 가능함.</p> <p>구내용 이동통신설비용 중계기가 지상, 지하 일부층의 TPS실에 설치될 예정임.</p> <p>외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세대제어 및 정보조화가 가능한 '롯데스마트홈' 서비스는 3년간 무상지원되며, 이후에는 유상으로 변경될 수 있음.</p>
단지출입구	<p>공동주택은 단지 차량출입구 3개소가 설치되며 비주거 판매시설, 업무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오피스텔은 차량출입구 2개소가 설치되며, 저층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은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필로티/동출입구	<p>4층에 주동 하부 전동 필로티 계획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출입을 위한 1개층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음. 필로티의 내·외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으며, 주동 출입구의 내·외부 계획 및 높이는 코어별 상이할 수 있음.</p> <p>4층 각 동출입구에서 필로티를 통과하여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동선이 다소 명쾌하지 않을 수 있으나 주동 배치 및 장애인 램프계획 등에 따른 동선 계획이며 추후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의 취향에 따른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p>
아파트 주동	<p>당 현장 부지의 용도는 공동주택 및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있는 단지로서 1층은 대부분 공개공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자전거 보관소, 6개동의 1층 주동 출입구 및 로비가 계획되어 있음. 이에 주동 출입구 인근에 공개 보행자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단지 내 각 동 보행자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전 동이 6호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1호라인부터 6호라인까지 각 호수별로 조망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전 동 엘리베이터 공용홀에 층별 일반쓰레기이송설비 투입구가 설치됩니다. 장비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추후 설치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101동부터 106동까지 동간 거리가 협소하여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4층에는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공간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장여건 및 인·허가에 따라 조정계획 및 디자인, 조성범위가 변경될 수 있고, 저층세대의 소음, 조망,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4층의 101동과 106동의 수영장위 공간 및 105동 골프연습장위 공간, 기계실위의 공간은 일부마감 높이가 상이하야 램프 등 경사가 있게 조정 계획됨.</p> <p>101동 5호라인 104C 타입과 106동 4호라인 104C 타입의 거실이 서로 마주보게 계획되어 있어, 조망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103동 및 104동의 동측과 105동 북측에 유니콘타워가 있으며, 이 타워의 규모는 25층의 규모로 공공업무시설이 1 ~ 22층이 계획되어 있고, 장기체류시설인 오피스텔은 23 ~ 25층으로 계획되어 있어, 소음, 조망,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공공업무시설 및 오피스텔의 규모나 층수 등은 기부채납 시설로서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p>105동, 106동 동측구간은 광역전철 재송역이 있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p> <p>3층은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 및 인·허가 진행여부에 따라 일부 공간 구획 등이 조정될 수 있음.</p> <p>104동 북측 3층에 입주민 포함, 외부인들이 사용이 가능한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가 계획되어 있음.</p> <p>3층의 주민공동시설은 존별로 계획되어 있어, 각 주동별로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 시 인·허가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p> <p>3층의 골프라운지는 지하층에서도 이용이 가능하게 별도의 엘리베이터가 있으며, 3층의 커뮤니티 시설은 1층에서 이용 가능하게 별도의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음.</p> <p>3층의 익스펜션 조인트 구간에 따라 일부 벽체 및 공간 등은 현장여건에 맞춰 일부 조정될 수 있음.</p> <p>피난안전구역층은 101동, 102동, 103동, 105동, 106동에 19층 및 47층에 있으며, 104동은 19층에 계획되어 있음.</p> <p>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장식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p>

	<p>지하 주차장은 각 주동의 위치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주차구획 포함)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 시 인·허가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1층의 일부 공간에는 소방용 연결송수구가 설치될 예정입니다.</p> <p>옥상에 옥외 미디어파사드가 설치 및 유지관리됨에 따라 각 동의 펜트하우스 및 일부 상층부 입주민들은 조망 및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저층부 102동과 103동 사이 벽면에 미디어파사드 설치 및 유지관리됨에 따라 상가 및 주민공동시설 이용 시 조망 및 채광 등 환경적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p> <p>미디어파사드의 위치, 크기, 설치방법 및 콘텐츠 등 인·허가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CG와 모형 등 홍보물의 내용과 상이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내용임.</p>
주동 엘리베이터	<p>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입니다. 101동, 102동, 103동, 105동, 106동은 피난용 및 비상용 엘리베이터 포함 21인승 이상 9대가 계획되며, 104동은 피난용 및 비상용 엘리베이터 포함 21인승 이상 7대가 계획되어 있음.</p>
외부코어	<p>판매시설을 이용 가능한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며, 판매시설을 이용 가능한 전용 엘리베이터가 계획되어 있음.</p>
무인택배	<p>각 동별 지하 2층 주동출입구 인근에 코어별 1개소씩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 위치 및 이동거리는 상이함.</p>
지하 주차장	<p>공동주택의 계획 주차대수는 4,294대로 관계 관청과의 협의 및 동선, 기능 개선을 위하여 주차대수의 변경 등 설계가 변경될 수 있음.</p> <p>지하 1층 주차장은 비주거인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공공 업무시설 및 오피스텔의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음. 주차장 진출입로는 북측, 서측 2개소에서 진출입 계획되어 있음. 전기자동차충전 구역 및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쓰레기 이송설비실(주거), 일부 판매시설 및 선큰 등이 계획되어 있음.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주차차단기 설치위치는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p> <p>지하 2층, 3층, 4층, 5층, 6층 주차장은 주거인 공동주택의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음. 주차장 진출입로는 북측, 서측, 남측 3개소에 계획되어 있음. 전기자동차충전 구역 및 생활폐기물시설, 제연팬룸, 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등이 계획되어 있음. 차량진입구의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 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주차차단기 설치위치는 여건에 따라 일부 변동가능). 지하주차장의 코어 인근에 소방관 대기공간이 계획되어 있음.</p> <p>지하 2층 주차장 택배차량(택배 차량 운행층)의 이동을 고려하여 주행통로의 높이는 2.7m이상, 주차면 2.1m 이상으로 계획됨. 지하 주차장 이용 시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그 외 지하 3층부터 지하 6층까지는 주행통로의 높이는 2.3m, 주차면 2.1m로 계획됨.</p> <p>지하 주차장 및 부속실에 설치되는 배관 및 덕트는 박리·박락 등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합페인트를 칠하지 않음.</p> <p>차량출입구 3개소 주변 저층 세대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포디엄 및 수경시설로 인해 저층부 세대 일부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저층부 주동 외벽 석재마감에 따른 입면이 상이할 수 있음.</p> <p>지하 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 전 필요 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은 급속, 완속 충전시설로 설치될 예정이며,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p> <p>지하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주차면 위치,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지하 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5m, 확장주차 폭 2.6m, 장애인주차 3.3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어 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관련부서 협의 시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p> <p>지하 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p> <p>지하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p> <p>지하 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p> <p>101동 지하1층에 쓰레기이송설비 기계실이 설치되어서 장비가동으로 인한 인접부에 소음 및 진동, 악취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쓰레기 반출을 위하여 지하주차장 내부로 쓰레기차가 이동 예정으로, 차량 이동시 악취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반출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쓰레기이송설비용 중간저장조는 동피트에 설치되며, 배관이 지하주차장 천장으로 설치가 되어 장비 가동시 소음 및 진동, 악취가 동지하 및 지하주차장으로 전달 될 수 있습니다.</p> <p>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둥 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음.</p> <p>발전기실/전기실/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p> <p>지하 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환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음.</p> <p>지하 주차장 동 지하 최하층 엘리베이터홀에는 제습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p> <p>지하 주차장에는 동 지하 엘리베이터홀 냉·난방용 실외기가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될 수 있음.</p>

부대 복리시설	판매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및 보일러실은 추후 실제 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바뀔 수 있음.
	판매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및 보일러실은 별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 열감, 연기 등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판매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시설,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행주체 협의 등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커뮤니티 모형, 커뮤니티 CG 등)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커뮤니티 내부 프로그램, 마감재, 평면계획, 가구 및 장비배치 등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판매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은 지상 3층에 계획되고, 각 동별 전용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며, 103동과 106동 사이에 연결브릿지가 설치됨.
	당 단지는 건물 특성상 지상 3층에 위치한 커뮤니티시설이 긴 복도 및 브릿지로 연결이 되어있으며, 각 동별로 커뮤니티시설의 이동거리가 상이한 것에 대하여 숙지하시기 바람.
	관리사무소는 106동 지상 1층에 설치되며, 지하 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경로당은 106동 지상 3층에 설치되며, 커뮤니티센터와 동선이 연결되어 있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어린이집은 105동 하부 1층에 설치되며, 인접한 외부에 옥외놀이터가 설치되어,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또한, 부출입구가 판매시설 로비 내에 설치되어 동선이 겹칠 수 있음.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시설이 104동 하부 지상 3층에 설치되며, 인·허가 조건에 의해 외부인이 사용할 수 있으며, 시설과 인접한 세대 및 커뮤니티센터 사용 시 소음 및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 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은 101~104동, 106동 지상3층 커뮤니티센터(라운지, 피트니스, 실내골프, 수영장, 탈의샤워실, 카페, 레스토랑, 키즈카페, 스튜디오, 독서실, 파티룸, 세탁실, 펫카페, 게스트룸 등)에 설치되며, 접근을 위한 전용 외부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별도 설치됨.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천장고 및 디자인은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시설,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하여야 함.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시설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시설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	
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 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의 운동장비(단, 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라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	
당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 내 공용부를 입주인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 고객의 입주관리 및 A/S 업무를 위한 입주관리 사무실 및 A/S 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음.	
공급시설	지하층에 물탱크실, 우수조,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정화조 등이 설치되어 해당동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주 및 경비실	단지 북측 차량 출입구 및 남측 차량 출입구에 문주가 각각 설치될 예정이며, 판매시설과 시야 및 조망권의 침해할 수 있으며, 보행 동선 등 문주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남측 및 서측의 문주 위 르엘 사인의 배면이 2층 판매시설의 시야 및 조망권을 침해할 수 있음.
	주 문주 계획으로 인하여 보행동선 및 도로선형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단지 북측 차량출입구에 경비실이 문주와 통합 1개소 설치되며, 경비실 인접 주차차단기 설치로 외부차량 진입 시 차량 대기가 발생할 수 있음.
단위 세대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 변경이 불가하오니, 계약 전 도면 및 사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공사 진행중에는 공종별 공사 방법에 따라 일부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법의 선정 및 변경은 시공사의 고유 권한으로, 계약자는 이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다투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p>세대 내부 실시공 시 관련 법규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견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되지 않음.</p> <p>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p> <p>주택형별로 기본 제공 품목 및 옵션 품목은 상이하므로, 분양 홍보물과 인허가 도서가 상이할 경우 홍보물을 기준 함.</p> <p>단위세대 미려형 계획으로 인해 거실, 안방, 침실, 주방의 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시 동·호수 확인이 반드시 필요함.</p> <p>일부 세대는 공사 품질 향상 및 시공 안정성 확보를 위해 공사 중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p> <p>기본 천장고는 거실, 침실 기준 2.4M이며, 공간별로 다를 수 있음. 바닥재에 따라 허용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p> <p>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깊이·형태는 천장 내부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설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p> <p>125타입의 아일랜드와 창대석 사이는 청소 및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이격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 시 시공 여건에 따라 위치가 달라질 수 있음.</p> <p>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및 구매, 천장 내 설비 배관설치 등으로 인해 도면상의 치수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p> <p>욕실 천장은 무달대 TYPE으로 시공됨.</p> <p>음식물처리기 사용 시 작동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설치된 하부장은 수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음.</p> <p>현관·욕실·다용도실 등 단차부는 바닥구배 시공에 따라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욕실의 단차는 침실 내부로의 물 넘침 방지를 위해 계획된 것으로, 신발 걸림과는 무관함.</p> <p>다용도실은 각종 설비 배관 설치로 천장을 조성하였으며, 본 공사 시 천장 조성의 높이가 다소 조정될 수 있음.</p> <p>세탁기 등을 설치하는 다용도실 및 발코니는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난방이 제공되지 않는 비난방 공간임.</p> <p>다용도실은 세탁과 건조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습기가 많아 곰팡이가 생기기 쉬우므로, 사용 시에는 자주 환기를 시켜야함.</p> <p>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 또는 조적벽 등) 접합부에는 크랙 방지를 위해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마감재 부착 디테일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p> <p>세대 및 공용부 조명기구는 천장재가 처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강은 생략할 수 있음.</p> <p>설비 배관 등으로 인해 다용도실, 발코니에 천정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p> <p>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p> <p>개인이 시행한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세대 내·외부의 제반하자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음.</p> <p>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세대 내 설계변경(구성, 설치위치, 마감재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할 수 없음.</p>
마감재	<p>단위세대의 마감재는 평형 및 타입별로 디자인이 구분되어 있으며, 각 타입에 맞춰 시공되므로 별도 선택은 불가능함.</p> <p>타사 또는 당사의 다른 사업장과의 마감 사양을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되지 않은 항목의 추가 설치나 교체는 요구할 수 없음.</p> <p>제공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p> <p>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 및 패턴이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 할 수 있으며, 동일한 모델이라도 조명, 각도, 시공 환경 등에 따라 색상과 디자인이 달라 보일 수 있음.</p> <p>타일, 벽지, 시트, 인조석 등 공장 생산 자재의 품질하차 여부는 KS기준 및 시방서에 따라 판단됨. 외관상 차이 또는 경미한 편차는 품질 하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p> <p>석재, 목재 등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으로 공급이 어려우며, 품질 하차 여부는 KS기준에 명시된 항목에 한해 판단됩니다. 자연스러운 무늬 차이와 색상 편차는 하자로 간주되지 않으니 참고 바람.</p> <p>마감자재의 두께는 자재별로 상이하므로, 실제 안목치수가 도면상 치수와 다를 수 있음.</p> <p>공용공간(현관, 복도, 거실, 주방)의 벽면과 천장은 도장마감으로 면의 텍스처가 일정치 아니할 수 있지만 공법 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p> <p>옵션 선택 여부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설치 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음.</p> <p>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 특성에 따른 사항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p> <p>현관,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에 적용된 타일 마감의 나누기선 및 줄눈 위치는 형별·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공사 시 하자 예방 및 사용성 개선을 위해 시공 위치와 개소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타일은 자재 고유의 물성으로 인해 소량의 휨(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p> <p>세라믹 대형 아트월 타일은 자재 양중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세대 디자인에 맞춰 컷팅 시공되며, 이에 따라 타일의 나누기선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p>인조석(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은 자재 특성상 패턴과 색상, 줄눈 나누기 간격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특성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p>

	<p>주방 상판은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 설치되며, 이에 따라 본 시공 시 연결 부위가 발생할 수 있음. 연결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p> <p>원목마루는 천연 원목 마감재로 패턴이나 옹이의 형태 및 크기, 각 장의 컬러가 일정치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하자가 아님.</p> <p>원목마루는 습기와 온도 변화에 민감하므로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로 인한 장시간 수분 노출 시 표면재의 변형, 하지 비틀림 등 우려로 주의하시기 바람.</p> <p>원목마루는 천연 소재로 표면의 강도가 예민함으로 가구 이동 시 바닥 보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p> <p>천장 상부 몰딩의 규격 및 형태, 재질은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특히 거실 우물천장의 몰딩 디자인 및 디테일(규격 포함)도 변경될 수 있음.</p> <p>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 바름 공법으로 시공되며, 테두리 및 매립박스 주위에만 접착이 이루어짐. 그 외 부위에는 들뜬 느낌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공법의 특성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p> <p>창호 및 목창호의 형태, 위치, 열림방향은 본 공사 시 시공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침실 및 욕실 도어 등 목창호의 프레임 사이즈, 단차, 형태 또한 다소 변경될 수 있음.</p> <p>목창호는 천연 무늬목 마감재로 패턴이나 옹이의 형태 및 크기, 각 실 도어의 컬러가 일정치 아니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하자가 아님.</p> <p>침실 목창호의 잠금장치는 키타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욕실은 안전을 고려하여 동전타입의 오픈방식의 잠금장치가 설치됨.</p> <p>목창호 도어에는 손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됨. 안전을 고려한 설계이므로 설치 위치 및 작동 방식을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람.</p> <p>단위세대 욕실 출입문은 본 공사시 PVC계열(ABS)도어로 시공되며, 침실 문짝의 상·하부 모서리는 별도 마감이 생략될 수 있음.</p> <p>침실 내부에 적용된 SD도어는 도장마감, 공용공간(복도 등)에 적용된 SD도어는 인테리어 마감으로 시공됨. 공간에 따라 마감 방식이 상이함.</p> <p>다용도실, 실외기실, 발코니 등 도장 마감이 적용되는 부위의 벽체 하부에는 오염 방지를 위한 투명 도장이 시공되며, 해당 도장의 색상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p> <p>각 실의 도어 후면 상부에는 벽체와 하드웨어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형 도어 스토퍼가 설치됨.</p> <p>도어의 열림 특성에 따라 벽체 및 하드웨어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상부형 또는 바닥고정형 도어 스토퍼가 설치됨.</p> <p>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 면)은 변경될 수 있음.</p>
승강식 피난기구	<p>당 사업지는 관련법령에 따라 승강식 피난기구가 적용되어 있으며, 피난용 승강식 피난기구는 짝수층, 홀수층과 교차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승강식 피난기구가 노출되어 있음. 승강식 피난기구는 고정형 봉이 달려있어 실외기실 이동시 동선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p> <p>승강식 피난기구는 전체 단위세대 타입에 고정형 봉이 달려있는 승강식 피난기구 타입으로 설치될 예정임.</p>
지하층 방화구획	<p>지하 주차장의 면적이 매우 크고, 화재 시 연소확대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의 우려가 있어 지하 주차장을 각 층별 2개 구역으로 방화구획하였으며, 방화구역별로 주차 램프를 설치함.</p>
대피방법	<p>피난시설(설비) 설치장소에는 피난 상 장애가 되는 시설물 설치하지 말아야 함. (공동주택 승강식 피난구 설치 장소 출입문으로 인해 사용 상 장애 발생치 않도록 하고, 실외기실(불연재료 별도구획 시 예외) 및 빨래건조대 등 장애물 설치하지 말 것)</p> <p>세대 내 화재발생 시 크게 2가지 피난경로가 있음. 첫 번째 경로는 승강식 피난기구(또는 특별피난계단)를 통해 피난안전구역(19층, 47층)으로 대피 후 지상 4층까지 내려와 공용복도를 통해 외부로 나간 뒤 구조를 요청하거나, 지상 1층까지 바로 내려가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음. 두 번째 경로는 특별피난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나간 뒤 옥상 헬리포트로 이동 후 구조요청을 하여야 함.</p>
전기차	<p>전기차 주차구역은 별도의 방화구획으로 구획하였고, 방출량이 큰 스프링클러 헤드를 계획함. (지상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구역은 예외)</p>
선하지 (행복체육공원)	<p>동해남부선 하부 체육시설(행복체육공원)과 인근 조정공간인 선하지는 본 계획부지 외의 공간임.</p>
원형육교	<p>원형육교 계획은 미확정 단계로 구조 및 형태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임.</p>
공개공지	<p>계획부지의 약 33%가 공개공지로 되어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공공에 상시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인 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또한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웬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조경 및 조경시설물, 미디어파사드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인 공동부담임. (공개공지 경계부에는 담장이 설치되지 않음. 만약, 단차부위가 있을 시 난간대가 설치될 수 있음)</p>
소공원1, 2	<p>도시계획시설이며 기부채납 부지인 소공원1과 소공원2는 추후 실시계획인가 변경 등으로 인해 디자인 및 바닥의 패턴, 형태, 수목의 종류 등 부산광역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최종 결정될 예정임.</p>
북측 출입구 횡단보도	<p>북측 출입구 횡단보도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후 최종 변경될 수 있음.</p>
복합용도에 따른 공용부 이용자 동선의 중첩	<p>주거/판매/문화 및 집회/업무용도의 복합화로 이루어진 단지이므로 용도별 공용부 이용자 동선의 중첩이 발생할 수 있음. (ex: 지하 주차장, 계단, 어린이집 피난동선)</p>
유니콘타워	<p>당 단지의 유니콘타워(업무시설)와 타 용도는 대지경계선의 구분 없이 계획됨. 유니콘타워(업무시설)는 준공 후 부산광역시가 소유하게 될 공공기여 건축물이며, 부산광역시와의 협의하에 설계/시공/감리가 진행됨.</p>

미디어파사드	서측 3층(102동과 103동 사이)과 4개 주동(101동,102동,103동,106동) 옥상층에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과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음. (유지보수 발생 시 인접 세대 및 해당층에서는 적극 협조해야함)
주동코어내 DOOR	연돌실험 결과에 따라 주동 코어내 도어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	음식물쓰레기 이송설비가 세대내 주방가구에 설치되며, 구체적인 시스템과 사양은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제공품목	각 세대별 기본제공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제공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 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함.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몰딩 및 걸레반이, 조명류 등의 설치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현관중문 등의 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구공사	주택형별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시스템가구는 단위세대의 평면계획에 따라 설치위치, 디자인, 내부 수납기능 등이 상이할 수 있음. 계약전 해당 세대의 가구 구성 및 사양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가구는 옵션 품목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형 가구와는 구성 및 사양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음.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기본형 및 옵션으로 설치되는 가구는 마감재 시공, 전기 배선 등과 연계되어 설치되므로, 설치 완료 후에는 이동이 불가함.
	아일랜드장은 가구 내 배선기구의 설치로 인해 이동이 불가하며,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을 고려하여야 함.
	가구의 마감·규격·구성은 인허가 도서와 다를 수 있으며, 하자 방지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구의 실제 사이즈는 마감재,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인해 도면상 치수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의 천장, 바닥, 배면 등 비노출면은 별도의 마감이 적용되지 않음.
	단위세대의 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가 견본주택에 시공된 품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음.
	외산가구 마감 중 무늬목 도어의 패턴 및 컬러는 천연 자재의 특성으로 균일하지 않으므로 이는 하자가 아님.
	가구 하드웨어 및 디테일은 품질 확보를 위해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가구문짝의 개폐방향은 입주자의 편의성과 사용성 개선을 위해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정 특성에 따른 사항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철재류는 녹 방지를 위해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 (알칼리·산성 세제 사용 금지)
	욕실 거울은 자재 특성상(은 성분 포함) 산성 또는 알칼리성 세제나 습기에 민감하여 변색이 발생할 수 있음.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람.
	욕실장, 샤워부스 등 욕실 가구의 색상, 규격, 형태 및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시공여건 및 자재 수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가구, 전기 및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공간은 구조적 또는 설치 여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가구 내부 구성은 본 공사 시 사용성 향상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조명 등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점검구 설치 및 안정기 매립 등을 위해 일부 공간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냉장고장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냉장고가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음.
	주방가구 상·하부장의 뒷판 상·하단 엷지면은 마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정상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방 상판에는 별도의 물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자재 및 구조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	
후드 상부 커버 몸체 내부에 자동식소화장치가 설치되며, 소화기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항은 법적 사항으로 적용되는 필수 설비입니다.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온수분배기는 싱크볼 하부에 노출 설치되며, 해당 공간의 수납 활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온수분배기의 설치 위치에 따라 싱크장 내부에 설치되는 가림판의 위치도 달라질 수 있음.	
팬트리 등 공돌로 구성된 가구의 상부에는 환기 겸용 도어 스토퍼가 설치되며, 환기를 위한 상부 이격설치가 기준임.	
기본형 및 옵션 선택 포함 시스템가구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디자인 및 레이아웃은 시공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싱크볼은 재질 특성상 스크래치나 수분 자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날카로운 물체나 고온 조리기구 사용은 피하고, 강한 산성·알칼리성 세제 대신 중성세제를 사용해 부드럽게 세척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p>본 공사 시 각 실별 코킹 시공 부위는 시공 여건 및 마감 사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p> <p>주방 내 기본제공으로 적용되는 빌트인 가전은 제품의 단종, 변경, 성능 개선 등 제조사의 사정으로 인해 제품 공급이 불가 시 동급, 동가 이상의 타 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음.)</p>
창호공사	<p>외부창호 형태 및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p> <p>커튼월은 풍압실험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 따라 커튼월 형태 변경, 창호 나누기, 크기 변경 및 프레임 추가, 색상 및 유리두께, 유리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음.</p> <p>커튼월 프로젝트 창은 풍압실험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 따라 프로젝트 창의 형태 변경, 창의 개폐범위, 손잡이 및 하드웨어 고정철물의 디자인 및 사양, 프로젝트 창의 설치 높이, 유리두께 및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음.</p> <p>커튼월 유리의 사양 및 브랜드 등 본 공사 시 변경사항으로 인하여 견본주택 유리스펙 표현 문구가 달라질 수 있음.</p> <p>단위세대의 거실 커튼월 외부 창호 색상은 다크그레이로 5층부터 18층까지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의 2호라인과 105동, 106동의 1호라인이며, 그 외 세대의 거실 및 침실 외부 창호의 색상은 라이트그레이로 계획되어 있음. 추후 현장여건 및 인·허가 진행상황에 따라 창호의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p> <p>거실의 커튼월 및 창호의 프레임 크기, 커튼월 바의 높이, 창호 나누기 크기 변경, 프레임 추가, 유리 사이즈 및 사양, 개폐범위, 색상, 손잡이 디자인, 커튼월의 형태 등은 풍압시험 및 인허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p>침실1, 2, 3, 4의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함.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접합유리)는 안전 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함. 유리난간대의 높이는 FL기준 H:1,400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인·허가 과정 및 현장의 풍압실험, 안전성 실험 등에 의거 본 공사 시 유리난간대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고, 이 부분은 침실1, 2, 3, 4에 적용되며 이외의 창은 골조턱이 H:1200 이상이므로 유리난간이 적용되지 않음.</p> <p>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내 실외기실 전동식 루버(개폐)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외관 디자인, 동작 세서, 작동방식 등은 파트너사의 기술발전 및 작동 방식 변경 등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p> <p>세대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p> <p>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로 상이할 수 있음.</p> <p>목창호, 문틀 등에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님.</p> <p>창틀 사춤은 결로방지를 위하여 단열성능이 뛰어난 우레아폼으로 시공할 수 있음.</p> <p>강제 창호 프레임은 그라스울로 충전한 후 설치하며, 사춤은 몰탈 또는 경량몰탈, 우레아폼 등으로 시공할 수 있음.</p> <p>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p> <p>세대 내 설치되는 거실창호(프로젝트창)의 크기, 두께, 개폐범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p> <p>세대 내 거실창호(커튼월)의 층간방화를 위해 설치된 벽체는 동급 이상의 층간방화를 충족 시키는 범위내에서 크기, 재료가 변경될 수 있음.</p> <p>집광채광루버가 설치되는 세대는 101동, 102동, 103동, 105동, 106동의 각 154 타입 1호 및 2호라인 5층 ~ 66층, 104동의 154 타입 1호 및 2호라인 5층 ~ 47층에 계획되어 있으나, 추후 집광채광루버의 설치여부 및 개수는 인·허가 협의에 따라 세대 타입별 상이할 수 있으며, 같은 세대 타입이라도 신재생에너지 산정구간에 따라 세대 내 설치위치가 상이하거나 미설치될 수 있음.</p> <p>집광채광루버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 인·허가 과정에서 루버의 사이즈, 형태, 프레임, 하드웨어, 개폐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음.</p> <p>커튼월 프레임은 풍압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창호나누기 크기 변경 및 프레임이 추가될 수 있음.</p> <p>태양광 설비(BAPV)의 유지관리를 위해 별도 설비 필요하며, 설치되는 세대는 101동, 102동, 103동, 105동, 106동의 각 1호 및 2호라인 5층 ~ 66층, 104동의 1호 및 2호라인 5층 ~ 47층에 계획되어 있으나, 추후 녹색건축인증 및 에너지 효율등급 본 인증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 및 사양, 스펙 등은 변경될 수 있음.</p> <p>커튼월 돌출 프레임이 설치되는 세대는 101동 1,2,4호/102동 1,2,4,5호/103동의 1,2,4,5/ 105동의 1,2,4,5호/ 106동의 1,2,5호 (각 5~67층), 104동 1,2,4,5호(5층 ~ 48층)에 계획되어 있으나, 돌출 루버 위치 및 형태는 시공성 및 성능개선, 인·허가 과정 및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p> <p>세대 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p>
	<p>실 시공 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p> <p>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안방,각 침실)으로 설치되며, 유상오피션 및 시스템 에어컨 세대는 제외임. (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p> <p>욕실 내 욕조바닥 및 샤워부스 하부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욕실 난방은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이 인근 침실과 연동 제어됨.</p> <p>욕실 내 욕조 측면에 욕조배수구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기본 설치 됨.</p> <p>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p> <p>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좌측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함.</p>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됨.
	세대 내 분전함, 통신함, 월패드, 스위치, 콘센트 등의 배관은 소음전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방음처리는 하지 않음.
	홈게이트웨이는 월패드에 내장형으로 시공되며 통신함 등에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음.
	단위세대의 급수급탕 분배기 및 오배수배관은 층하배관 방식으로 점검 시 하부층 세대에서 점검 해야함.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의 욕실배기는 공동배기 방식으로 적용되며, 중간 기계실에 욕실 공동배기용 환이 설치됨.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배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관 일부 방법용 배관카바가 설치됨.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여부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전열교환설비 급배기용 덕트가 세대 천장에 설치되며, 일부구간(승강시피난기구, 발코니)에 덕트가 노출 설치될 수 있음.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용 가스배관은 실외기실 내에 입상배관 및 가스계량기가 설치될 예정임. 현장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에는 전기 인덕션이 기본제공되며, 주방에 별도의 가스배관 및 차단기가 설치되지 않음.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용 보일러는 실외기실 내에 설치되며, 동파방지용 열선이 설치됨. 동파방지를 위하여 겨울철 입주자의 관리가 필요함.
	단위세대에는 음식물 쓰레기이송설비용 투입구가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함.
	건본주택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이송설비 제품은 DP용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음. 또한, 가구장 및 배관 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 또한, 일부 대형형의 경우 난방분배기가 일부 가구장 하부에 추가적으로 설치될 수 있음.
	단위세대 인덕션이 아일랜드로 설치될 시, 자동식소화기설치를 위하여 후드 천정부에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됨.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커뮤니티센터, 판매시설, 공용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 관리실, 다함께 돌봄센터)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욕조, 레인샤워, 세탁, 손빨래, 발코니, 양변기 청소용수전 등), 욕실 악세사리류, 보일러의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수전류에는 별도의 마감커버가 설치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욕조, 레인샤워, 세탁, 손빨래, 발코니, 양변기 청소용수전 등), 욕실 악세사리류, 보일러는 단종 및 제조사 문제로 납품 불가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욕실 악세사리의 경우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건본주택의 설치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변경될 수 있음.
	기전시설물 및 배관 설치를 위하여 단위세대 내 커튼박스 사이즈 및 간접등박스 높이가 조절될 수 있음.
	단위세대 주방의 식탁위치는 설계 시 적정위치로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변경은 불가함.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세대분전함, 통합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 시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전기쿱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 전기용량 3.3kw초과 전기쿱탑을 설치할 경우 입주자 별도 전기공사 필요함
	세대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함.
	세대 조명기구의 색온도는 4,000K(백색)으로 적용되며 고효율인증을 취득하므로 추후 6,500K(주광색)등으로 색온도 변경은 불가함. (유상옵션 조명기구에 따라서 색온도가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유상옵션 제품이며, 본공사 시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건본주택의 설치위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건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
발코니 및 실외기실	다용도실 발코니, 실외기실 등 발코니 타입의 실의 바닥레벨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다용도실 세탁기 설치구간의 바닥단차 및 다용도실 가구 형태, 적용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p>발코니 천장고의 경우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의 덕트 및 배관시공에 따라 천장고가 변경될 수 있음.</p> <p>발코니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p> <p>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 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음.</p> <p>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p> <p>타일은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p>		
유상 옵션	공통 사항	<p>옵션 품목 미선택시, 기본(확장 기본형) 사양으로 시공됨.</p> <p>옵션 품목에 대한 상세 내용 중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추후 옵션 계약 시 별도로 안내 후 계약이 진행될 예정임.</p> <p>시공상 제약으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옵션 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옵션 변경이나 해약이 불가함.</p> <p>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 및 구성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나 품목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p> <p>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일부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람.</p> <p>옵션 품목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 계획, 일부 조명 위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마감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람.</p> <p>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의 컨셉에 맞춰 디자인 및 품질 관리된 제품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한 교체나 해약은 불가하오니, 타사 및 시중 제품과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해 주시기 바람.</p> <p>상기 제품은 품질, 성능 개선, 신제품 출시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공급이 불가할 경우, 동급 또는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대체 될 수 있음.</p> <p>옵션 품목에 관한 유의사항은 각 품목별로 명기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람이며, 선택 이후에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p> <p>카탈로그에 표기된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설계변경 등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p> <p>옵션 품목의 상세 내용은 공고문 표기 및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 및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람.</p> <p>옵션 품목의 판매가격은 기본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반영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은 불가함.</p>		
		<p>옵션 가전은 B2B 전용 모델로, 시중 판매 B2C 모델과 외형은 유사하나 내부 사양은 일부 다를 수 있음.</p> <p>빌트인 가전은 법규 및 제규정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여건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p> <p>빌트인 가전은 제품 설치와 원활한 환기를 위해 후면에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 설치하며, 구조상 뒷부분이 벽면에 밀착되지 않으며, 이는 정상 시공 기준임.</p> <p>냉장고 공간은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제품이 제공되는 가구의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어려울 수 있으며, 냉장고의 돌출 정도는 제품별로 다를 수 있음.</p> <p>세대 단지 배치에 따라(세트 구성 제품별 설치 위치) 좌·우가 변경될 수 있음.</p> <p>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의 도어 오픈 방향은 고정으로 변경 불가함.</p> <p>기본 및 옵션품목 쿡탑은 동일한 상판 타공 치수로 시공되지만, 입주자 개별 구매 제품과 규격이 달라 설치가 어려울 수 있음.</p> <p>84, 104 타입의 외산가구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p>		
		가전 기류	<p>현관 중문 미선택 시, 중문틀은 시공되지 않음.</p> <p>현관 중문의 틈으로 소음, 먼지, 외풍 유입이 있을 수 있음.</p> <p>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성능을 포함하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을 목적으로 설치됨.</p> <p>현관 중문은 5T 강화유리로 시공되나, 물리적 충격에 의해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람.</p> <p>현관 중문은 본 공사 시 제조사, 규격, 하드웨어 사양, 컬러 등이 변경될 수 있음.</p> <p>현관 중문의 개폐 방향은 세대의 단지 배치에 따라 좌·우가 변경될 수 있음.</p> <p>현관 중문 미선택 시 천장 몰딩, 신발장 케이싱, 디딤판, 벽 마감의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p>	
			<p>주택형별 마감 구성은 평면 타입별 콘셉트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 하는 품목으로써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p> <p>단위세대의 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 및 패턴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품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음.</p> <p>84, 104타입의 옵션 세라믹 거실 아트월은 건립세대 104A 타입에서 참고하실 수 있음.</p> <p>타일은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음.</p> <p>타일은 자재 고유의 물성으로 인해 소량의 휨(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음.</p> <p>세라믹 대형 아트월 타일은 자재 양중 및 시공성 향상을 위해 세대 디자인에 맞춰 컷팅 시공되며, 이에 따라 타일의 나누기선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p>	
			마감재	

가구류	아트월 타일은 줄눈 없이 시공되며, 자재 특성상 이음부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음.
	아트월 타일의 코너부는 시공성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코너비드로 마감됨.
	아트월 타일은 자재 특성상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패턴 연속성과 무관하게 시공될 수 있음.
	주택형별 마감 구성은 평면 타입별 콘셉트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 하는 품목으로써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단위세대의 마감자재는 제조일자에 따라 컬러가 견본주택에 시공된 품목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이 달리 보일 수 있음.
	84, 104타입의 옵션 유럽산 주방가구는 건립세대 104A 타입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각 주택형의 특성에 따라 수납구성은 상이할 수 있음.
	84, 104 타입의 유럽산 주방가구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주방 상판은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 설치되며, 이에 따라 본 시공 시 연결 부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결 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주택형별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시스템가구는 단위세대의 평면계획에 따라 설치 위치, 디자인, 내부 수납 기능 등이 상이할 수 있음.
	주방 후드는 조리시 발생하는 연기 및 냄새 배출을 위한 강제 배기 장치로 사용 시 풍량 및 풍속에 따라 일정 수준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주방 싱크볼의 오버플로우 위치는 본 공사 시 조정될 수 있음.
	기본형 및 옵션으로 설치되는 가구는 마감재 시공, 전기 배선 등과 연계되어 설치되므로, 설치 완료 후에는 이동이 불가함.
	가구의 마감·규격·구성은 인허가 도서와 다를 수 있으며, 하자 방지 및 사용성 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구가 설치되는 부위의 천장, 바닥, 배면 등 비노출면은 별도의 마감이 적용되지 않음.
	가구 하드웨어 및 디테일은 품질 확보를 위해 동등 이상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125타입의 벽판넬 드레스룸 조명형 시스템가구 옵션 선택시 벽판넬 드레스룸 조명형 시스템가구와 유리슬라이딩 도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실의 스위치의 위치가 조정됨.
	154타입의 침실1 수납 강화형 불박이장 옵션 선택 시 건립세대 154 타입 침대 배치 부위(화장대, 벽 기둥사이)에 시공됨.
	154타입의 침실2 가족실형 슬라이딩 도어 옵션 선택시 벽체+침실도어(목문)가 삭제되고 유리슬라이딩도어가 설치되며, 해당 실의 스위치의 위치가 조정됨.
	견본주택에 건립된 154타입은 디렉스 마스터룸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해당 옵션은 침실1+침실2를 통합하여 내부 순환동선과 침실2 조명형 유리장식장으로 구성되는 상품입니다. 또한, 침실1 도어의 위치가 아트월 부분으로 조정되는 구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옵션 미 선택시의 침실1 도어 위치를 기본형 평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4타입의 벽판넬 드레스룸 조명형 시스템가구 옵션 선택시 침실1의 드레스룸(1,2)의 구성이 벽판넬 드레스룸 조명형 시스템가구로 구성되며, 실의 내부 창호 및 커튼월 부위를 제외한 부위에 가구가 구성됨.

※ 주의사항

- ① 본 제작물의 평면도 및 투시도 등의 CG 삽화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② 발코니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③ 발코니 난간의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창호의 높이, 크기,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④ 발코니 측·외벽에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⑤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⑥ 배치도(CG, 모형)의 단지내·외부 도로선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⑦ 주민공동시설은 기본마감까지만 시공되며, 이동가구 및 가전, 집기, 비품 등은 제공되지 않음.
- ⑧ 견본주택 단위세대에 설치된 소방 감지기, 유도등 및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실제 시공 시 변경됨.

IX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주택법」 제48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 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예정일 : 2030년 05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 등)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이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지합니다.

보증서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92025-101-0002500호	3,084,917,55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합니다.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사업시행자는 분양계약 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하여야 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유의사항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백송홀딩스와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 및 시공사 롯데건설(주), 대출금융기관간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1.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시행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백송홀딩스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2.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백송홀딩스와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백송홀딩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백송홀딩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3.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백송홀딩스와 시공사인 롯데건설(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6.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7. 본 관리형토지신탁 관련 유의사항은 본 공고 모든 내용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주)하나자산신탁	(주)백송홀딩스	롯데건설(주)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 4007호 (재송동, 센텀스카이비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4길 29(잠원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80111-1111622	110111-0014764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회사명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주) (주)무영씨엔건축사사무소 (주)삼우씨엔건축사사무소	(주)력기기술단	(주)조이테크	(주)성우엔지니어링
감리금액	29,131,126,200	2,339,241,995	1,699,194,410	4,122,686,541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음)

■ 홈페이지 주소 : <https://르엘리버파크센텀.com/>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406-8번지 / ☎ 1533-9988

- ※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청약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함)